

# INVENTION & PATENT

2012 December

# 12



INVENTION & PATENT \_ Vol. 437

##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주는 교훈

스티브잡스의 매킨토시로 돌아보는  
창조와 모방의 혁신





"아이디어가 시골티즈가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사업안내

##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 상표·디자인권展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2012 Trademark · Design Right Exhibition 2012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2012

주최:   
주관: 2012  
기간: 2012



## 미래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로 『상표·디자인권展』, 『서울국제발명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우수 지식재산(특허 94점, 상표 11점, 디자인 14점) 수상품뿐만 아니라 세계 31개국에서 온 총 500여점의 해외 발명품이 함께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호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등이 참석해 우수 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했다.

올 한 해 가장 우수한 발명품에 주어지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교량의 멀티 스캔이 가능한 교량 점검용 붐장치’가 수상했다.

로봇, 무선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이 발명품은 위험성이 높았던 기존의 교량 하부 점검 방식을 영상 점검으로 대체한 것이다. 차량에 탑재된 붐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검로봇은 신속이 자유로워 빠른 시간 내에 교량 전체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다.



1



2

국무총리상에는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 과 (주)소어베드의 ‘의료용 침대’가 수상했다.

농촌진흥청 한귀정 과장은 첨가물 없이도 최장 6개월까지 굳지 않는 떡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는 제조 후 금방 굳어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던 고민거리를 해결한 생활 밀착형 발명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량생산과 보관이 어려워 수출이 어려웠던 떡을 세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주)소어베드(대표 백창현)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환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의료용 침대를 개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료용 침대는 오랫동안 같은 부위가 눌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욕창’을 해결할 수 있다. 침대 전면이 피아노의 건반처럼 구분되어 있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지속적으로 눌러는 신체 부위를 최소화해 환자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전시와 더불어 전시품에 대한 구매상담회와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정책설명회가 함께 진행됐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대회와 진품모조품 퀴즈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구매상담회장에는 국내외 유명 바이어들이 함께해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아태지역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타바오닷컴,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업체인 이베이, 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 미국 최대



3

### 사진설명

#### 사진1

- 김형식 국무총리(중앙) · 김호원 특허청장(우)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좌) 및 내외귀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 사진2

- 김호원 특허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3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등이 참여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어느덧 3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품되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우수한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상품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발명인은 국가경쟁력을 지키는 파수꾼”



김 황 식  
국 무 총 리

존경하는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발명과 기술혁신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210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창의와 열정으로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오신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께 큰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인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쟁 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품이나 기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변화의 속도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또 국가 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세계시장이 통합되면서 한 순간이라도 현실에 안주했다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물론 자국 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핀란드 수출의 20%, 법인세의 23%를 떠맡았던 노키아나, 전후 일본부흥의 핵심동력이었던 가전 3사의 현주소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근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창출 R&D 예산' 을 152조원이나 증액했고, 중국도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특허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지난해 애플이 캐나다 통신회사 노텔(Nortel)을 인수하고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모두가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발명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이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

금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수준이 선진화되면서 이에 대한 견제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난 7년간 4.3배나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의 추격도 큰 위협입니다.

2009년 지식재산 전략을 3대 국가전략의 하나로 공표한 중국은 지난해 280만 건의 지식재산을 출원함으로써<sup>1)</sup> 세계 1위의 지식재산 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

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발명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경계를 명확히 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창출된 지식재산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발명인 여러분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 창의 인재, 발명 영재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특허 52만 건, 실용신안 58만 건, 디자인 51만 건, 상표 120만 건 등

# “젊은이들이 상상력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고유의 신바람 · 신명의 문화 만들어야”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내 · 외 귀빈 여러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인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세계 경제는 지식과 창의를 기반으로 무한경제 시대를 구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개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표기업 간의 특허소송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 모바일 시장의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우리는 창의적인 기업하면 애플을 이야기했으며 창의적인 기업인 하면 스티브잡스를 거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애플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룩해 오신 발명과 기술발전의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발명이라 하지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상력이고 창의력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창의력이 국력인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의 발전과 도약은 갑자기 태어난 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나 학문의 부단한 연마에 달려있습니다.

잠시 문화산업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 만큼 세계를 강타한 창의 제품이 있을까 합니다.

싸이는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로써 전 세계의 대중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흥겨운 리듬, 내방식대로의 모습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상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한 신바람, 신명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술 융합형 창의 상품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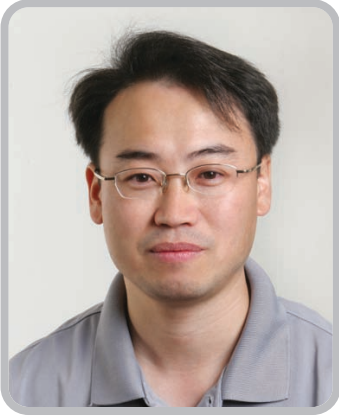
우리 발명인들의 상상력에서 발화된 창의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세계적인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등을 통해 발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은 물론 발명인의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배우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가족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이병주 책임연구원

## “사람이 하기 위험한 것을 대신 하는것이 기계발명의 이유죠”

“**사**람이 하기 위험한 것을 대신 하는 것이 기계 발명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량 상부구조의 멀티스캔이 가능한 교량점검용 붐 장치’를 개발, 2012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도로공사 이병주 책임연구원은 “이 기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교량 하부를 영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발했다”면서 “사람이 직접 교량에 올라가 모두 점검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매우 위험해 사람을 대체할만한 무언가가 꼭 필요했다”며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술은 로봇과 무선통신, IT기술 등을 융합한 것으로 기존에 사람이 교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획득 및 조합, 화상처리를 하던 일체의 작업을 붐장치의 영상점검 하나로 대체하는 신기술이다.

이 장비는 차량 탑재형으로 고안되었으며 기존 GPS(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10~30배 더 정밀한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와 유압 붐장치, 각종 거리 측정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10기의 점검로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병주 책임연구원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점검로봇이 교량 전면을 동시에 스캔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컴팩트한 구조로 매우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전했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료용 침대를 개발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개발한 소어베드사의 욕창 발생 방지 의료용 침대의료가 2012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의료용 침대는 몸을 마음대로 잘 가눌 수 없는 중환자가 많은 병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욕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욕창이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압박이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이 죽어버려 발생하는 궤양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소어베드(대표 백창현)가 개발한 의료용 침대는 상부면을 피아노 건반처럼 분할하여 구성하고 각각을 구동하여 신체의 압박부위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와상 환자에 있어 체위변경 없이 욕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용 침대이다.

(주)소어베드의 백창현 대표는 “환자나 노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나 장애에 따른 상황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혈액순환이 막히는 현상과 동시에 외적인 합병증 증세를 막고자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 (주)소어베드  
백창현 대표





• 농촌진흥청  
한귀정 과장

## “맛있는 떡, 오래 오래 즐기세요”

“**한** 국 사람으로 항상 아쉬운 순간이 있죠. 떡은 맛있지만 하루만 지나도 딱딱해져서 못 먹는다는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한귀정 과장은 기존의 생산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관방법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쫄깃하고 말랑말랑하게 보관할 수 있는 “굳지 않는 떡”을 개발했다.

한 과장이 개발한 굳지 않는 떡은 찹쌀로 떡을 만들 때 떡메로 치는 과정인 편칭기법과 보습성 유지기법을 멥쌀에도 응용한 것으로? 2010년 12월 특허를 받은 후 기술이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굳지 않는 떡은 기존 보다 보관기간이 대폭 길어져 대량주문·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보관만 잘한다면 상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가 가능하여 항상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모두 팔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았던 상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없애준 셈이다.

게다가 떡으로 만든 김밥과 송편 등 새로운 요리 개발도 가능해 굳지 않는 떡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귀정 과장은 떡 찰흙이라는 새로운 놀이문화 보급에도 적극적이다.

한 과장은 “지금까지의 떡은 만들고 바로 먹는 음식에 속해 있었지만 앞으로의 떡은 라이스 클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라이스 클레이란 굳지 않는 떡의 속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찰흙 대신 가지고 놀기도 하며 바로 먹을 수도 있는 새로운 지능 개발 놀이 아이터이다.

빨리 굳어 버리는 속성 때문에 한국인의 음식으로만 유지돼 왔던 떡이 장기간 굳지 않는 기술개발로 세계인의 음식으로 인기를 끌날도 멀지 않았다.



## “새나가는 스팀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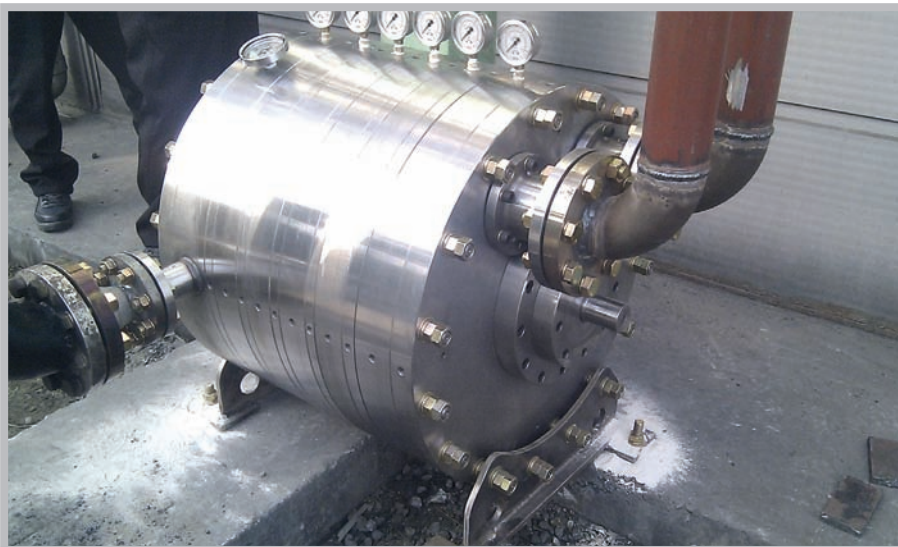
“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많죠. 누구는 잉여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기준에 플라스틱이나 유리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번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는 이미 써버린 에너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이 발명인들 사이에서 주목 받았다.

(주)HK터빈은 노즐에서 뿜어져 버려지는 스팀을 재사용하여 한 번 더 돌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터빈 구조 기술을 개발해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잉여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스팀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이다.

노즐을 사용하여 돌아가는 만큼 간단한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초정밀 가공 및 특수 소재를 사용하는 터빈보다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어 더욱 기대되는 기술이다. 또한 작용, 반작용이라는 매우 간단한 원리로 움직여 가공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HK터빈 김기태 회장은 “이미 많은 수의 특허 등록과 출원을 마친 상태며 해외에도 출원된 상태다”면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반작용식 터빈의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주)HK터빈  
김기태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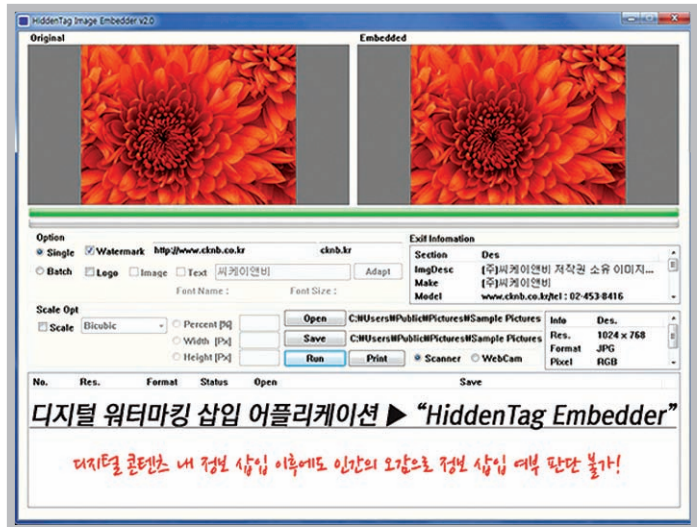
• (주)씨케이앤비  
배기혁 대표

# “저작권! 이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주) 씨케이앤비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숨겨진 정보를 삽입하여 저작권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2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ImageQR' 기술은 이미지 등의 특정 패턴을 분석해 워터마크로 만든 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숨겨놓는 방식을 통해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한 소리의 패턴으로도 적용이 가능해 음원에 적용하여 적법한 저작권물인지 아닌지 가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씨케이앤비의 배기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몇몇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터부시 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저작권물은 기업 또는 개인의 창작물로 항상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수상자

대상 · 우수상 · 특별상

상격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대통령상	한국도로공사	-	교량의 멀티 스캔이 가능한 교량 점검용 불장치
국무총리상	㈜소어베드	-	의료용 침대
	농촌진흥청	-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
특별상 WPO사무총장상	㈜에이치케이터빈	-	반작용식 스팀 터빈
	㈜씨케이엔비	-	구조적 멀티패턴 워터마크 생성 장치 및 방법과 이를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장치 및 방법과 워터마크 검출 장치 및 방법

###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창성헬스테크	이금선	홀로하는 배드민턴 연습대
삼진폴리텍(주)	-	폴리스티렌 발포 트레이용 흡수성 마스터 배치 칩 조성물
엘에스산전(주)	-	전자 개폐기
(주)엔이티하나로	-	건축물의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

### 금상(지식경제부장관)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바이로메드	-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주)이에스에스이	이재평	능동형 미세유량조절기
에이펙셀(주)	-	마이크로 초미립 분쇄기
하이셀(주)	-	플렉서블 LED 모듈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회생수단을 구비한 자전거의 무단변속기
옥일산업사	심상옥	연습용 허들
주식회사 하렉스	-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조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색온도 제어방법
(주)아하정보통신	-	전자교탁시스템
옵토파워(주)	-	반사형 광온도센서
(주)용전	-	상하수도용 파이프
한화레저(주)	-	여과장치
(주)헬스카페365	성석진	의자형 좌훈용 장비
현대위성네트웍스(주)	-	횡단보도용 신호등 어셈블리
(주)두레방식품	-	식혜용 엿기름 티백의 제조방법

### 은상(특허청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캐노픽스	-	일체형 자전거 보관대
AOG SYSTEM	이희곤	스케일 제거기능을 갖춘 온수분배기
초록	이종환	압축 휴지통
퍼즐리아	백남헌	칠교놀이 세트
광테크노마그네트	최태광	영구자석과 전자석을 결합한 자성체 홀딩장치
(주)에스엔케이	박한규	스마트 그리드용 스위치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그래핀 전극과 유기물/무기물 복합소재를 사용한 전자 소자 및 그 제조방법
미니솔라(주)	정영식	학습교구용 태양전지 모듈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이진영	음식 보관용기 건조 장치
(주)바스탄	-	장갑, 터치 부재 및 도전 물질 스프레이
-	김승일	바르는 액체 황토벽지 조성물 제조방법
(주)아미코스메틱	이경록	피부 탄력 증가와 피부노화 억제 효과를 갖는 원지, 길경, 병풀을 함유한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추출물 제조 방법
(주)나노카보나	-	무냉각 고압축·고효율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
지구사랑	김남채	자전하는 지구본 장치
케이비엠테크놀로지(주)	-	건물 외장재의 재생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건물 외장재의 재생방법
미래이엔씨기술사사무소	조영석	높이 및 기울기 조절이 용이한 지주 및 핸드홀 커버 장치
에스앤에이치디자인(주)	이현숙	원형 PHC말뚝을 이용한 집수구가 구비된 친환경 옹벽 및 그 시공방법
(주)천우금속	-	유동성에 의한 단계적 충격 완화 기능을 갖는 방폭 창호 구조체와 이를 이용한 충격 완화 방법
(주)바이오리듬	정용현	3단계로 코팅되는 김치 유산균의 코팅방법 및 그로부터 제조된 코팅된 김치유산균 및 코팅된 김치 유산균이 함유된 조성물
목우산업	김세홍	보호캡을 갖춘 수목서포터
(주)아이디시스	-	바이오록스 조명 장치
(주)HISYSTEM	권태현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용 전원공급장치
(주)디비카드	유승훈	개인식별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입력 및 금융거래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입력 및 금융거래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	한영철	타이머 가스 차단기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왕종문	해양 오염 방제장치
(주)하나시스템	-	조작감이 향상된 탄성스트링 와인딩 및 언와인딩 장치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3차원 가상 간 수술 계획 시스템
대원정밀	안혁	랙과 피니언을 이용한 전동 실리콘 토출건
온누리케이1방수(주)	-	친환경 고탄성 무기질계 도막방수재
청도산업(주)	박광수	컴퓨터 책상
-	윤형태	캡슐 씨앗
토리텍	양성목	손가락으로 파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컴퓨터용 마우스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두원물산	서치영	확장가능한 디지털 해충퇴치기
-	이수동	자전거 팔 거치대
-	홍정희	액상형 호신용 분사기
(유)셋토퍼	-	셋톱박스 설치용 브라켓 장치
(주)엠와이	-	액상발효소멸식 음식물 처리장치
(주)ADD웰빙테크	-	층간소음 저감용 건식난방패널의 구조

동상(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대양코퍼레이션(주)	김금균	압축기 보조제어장치 및 그에 의한 압축기 보조제어방법
배니-굿	조순형	다수의 다각면 단위체로 이루어지는 베개
-	이승철	장신구 고정용 옷핀
(주)여양	-	조립식 영구거푸집 유닛 및 이를 이용한 벽체 시공방법
패션익스플로러	문준희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 크기 제어 방법 및 장치

### 동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한샘테크	김형배	시간 표시 장치
(주)엘티앤이	-	엘이디 가로등 및 보안등 냉각장치
(주)타이젠	-	크랭크운동기구
(주)모이라	마소영	멀티 재배장치
(주)푸드에너지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법
(주)한길산업	최영완	건설용 바인더

### 동상(중소기업중앙회장상)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주)동양이지텍	-	센서리스 및 2슬롯 1조식 구동회로를 갖는 온수매트의 온수보일러용 브러시리스 모터
에코퓨어	김은수	휴대용 마스크 장치
화분들닷컴	김인하	화분용 급수장치
반디통신기술(주)	임태환	전등의 RF 스위치 콘트롤러 전원공급장치
(주)대경산업	-	배뇨 분석기
글로벌코리아(주)	-	수조가 없는 초절수 및 소리지감형 양변기

### 동상(한국무역협회장상)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노펄스(주)	임주혁	증기압력을 이용한 진공 흡입장치
아이디어 한	한희현	휴대용 냉각 모듈
(주)씨크릿우먼	김영휴	가발 프레임 외부로 돌출되는 식모라인 보강구조를 갖는 가발 및 그 이용방법
(주)하렉스인포텍	-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복합결제시스템 및 복합결제방법
서울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	좌변기용 배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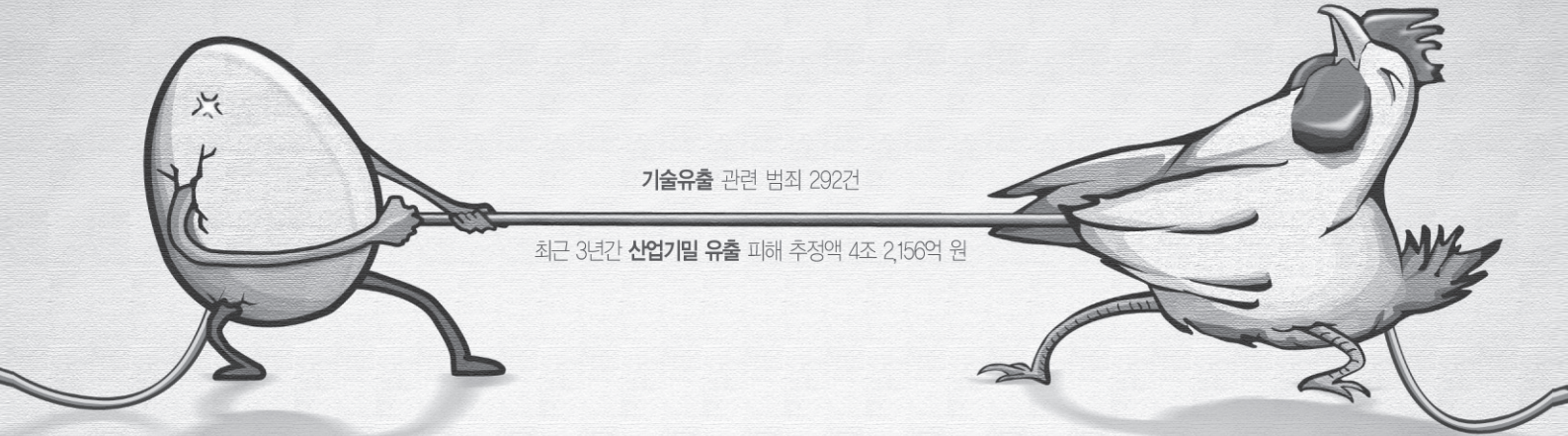
### 동상(대한변리사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형행신	휠체어 운반기
-	권영세	온수 보일러의 동파 방지 시스템
해보라넷	신두식	이어셋
(주)에이치투에스	최낙진	케이블 홀더
(주)수면과건강	황청풍	하악 전진장치

### 동상(한국여성발명협회장)

선정자	권리자	발명(고안)의 명칭
-	오승환	나노버블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세탁방법 및 그 장치
(주)창성에이스산업	-	자가진단형 불꽃감지기
-	백철민	새싹채소 재배용 일체형 키트
(주)월드비즈넷	-	공유 데이터 베이스상에서의 데이터 맵핑 방법 및 시스템
화신기공(주)	-	이송호퍼 및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가 구비된 환경친화형 폐사가축 처리장치
(주)호영하이텍	-	난간용 로프의 텐션 유지 장치 및 이를 구비하는 난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술유출 관련 범죄 292건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 원

# 아직까지 분쟁 중?

이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www.tradesecret.or.kr](http://www.tradesecret.or.kr)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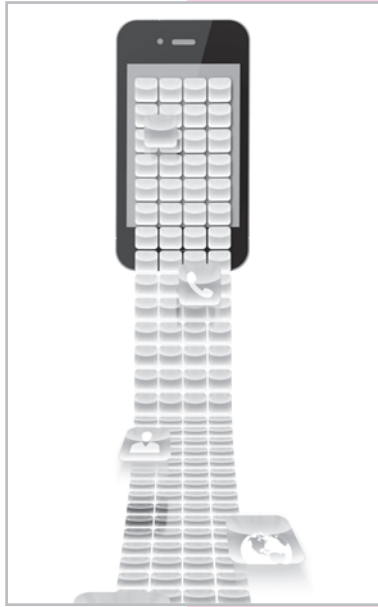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 도용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그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의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 특장점

- 한국특허정보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서비스
- 원본 제출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함으로써 증명과정에서 비밀정보의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
-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전자파일을 지원
-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활용대상

아이디어 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 노하우, 조리법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



# 발명특허

# COLIUMU

스티브잡스의 매킨토시로 돌아보는 창조와 모방의 혁신

새국면 접어든 삼성 - 애플 특허전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주는 교훈

'싸이(Psy)'는 세계 각국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FTA시대, 지식재산을 포함한 융합경쟁력으로 승부하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발명 길잡이, YIP

# 스티브잡스의 매킨토시로 돌아보는 창조와 모방의 혁신

1983년 가을 스티브잡스(Steve Jobs)는, IBM을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감시·통제자)에 비유하면서 다가오는 1984년은 조지오웰의 '1984' 처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제품을 소개한다. 그것은 애플의 '매킨토시'였고, 뒤늦게 PC 시장에 뛰어 들었음에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IBM PC에 대항하기 위한 혁신의 걸작이었다. '매킨토시 vs. IBM-PC'의 1980년대의 경쟁상황은 지금의 '애플 vs. 삼성과의 특허 전쟁' 또는 '아이폰 vs. 안드로이드폰'의 경쟁 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세기적으로 걸출한 창조적 발명·사업가의 젊은 눈에 모방자로 묘사된 IBM-PC 산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IBM-PC 플랫폼'이라는 열린 표준 공간에서 일어난 혁신들은 '80~'90년대의 미국 IT 산업의 토대가 되었고, 당시 일본에 뒤져 있었던 전자산업을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이동시켜 21C 모바일 정보화시대를 열어갔기 때문이다. IBM-PC에 대항하며 매킨토시를 창조해낸 스티브잡스의 입장에서 '창조적 발명'과 '모방의 혁신' 사이의 조화로운 권리보호를 생각해본다.



큰 반향을 일으킨 애플사의 매킨토시 광고 '1984'. 블레이크드러너 감독의 Ridley Scott이 제작하였고 1984년 슈퍼볼에 TV전파를 단 한번 뒀으나, 광고 역사상 최고의 광고로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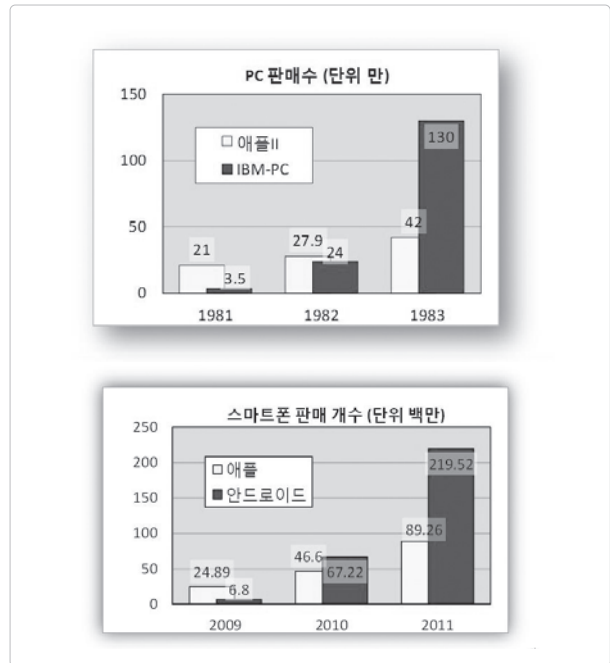
## 매킨토시 탄생의 시대적 배경

**잡스 이름의 역할 - 매킨토시** PC 산업의 시발점이 된 애플II 즉, 최초의 PC는 위대한 컴퓨터 엔지니어 스티브워즈니악(Steve Wozniak)의 작품으로 대략 인정해도 될 듯하다. 워즈의 발명품을 전원 장치와 근사한 케이스까지 갖춘, 사용자 친화적인 패키지로 상품답게 변신시킨 인물은 스티브잡스(Steve Jobs)임에도, 애플II의 놀라운 회로 기판과 운영 소프트웨어 즉, PC의 플랫폼은 천재 엔지니어 워즈가 창조해 낸 것이기에 애플II는 워즈의 창조물로 여겨진다. 스티브잡스는 자신만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창조물을 원했던 것일까?<sup>1)</sup>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잡스는 1979년 12월 제록스의 팰러앨토 연구 센터(PARC) 방문에서 알게 된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 기술’을 보자마자 그것을 컴퓨터의 미래로 생각했고, 제대로 구현할 물건을 희구하고 있었다. 애플이 PARC으로부터 그 기술을 가져다 쓴 것은 IT 업계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도둑질로 많이 회자되고 있으나, 잡스는 컴퓨터의 미래를 불현듯 선명하게 보여준 GUI 기술을 제록스로부터 차용하는 것은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신이 하는 일에 접목해 활용하려는 노력”이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sup>2)</sup> 잡스가 다음으로 개발할 PC는 당연히 마우스를 이용한 GUI를 갖춘 컴퓨터임이 분명해졌다.

**IBM에 맞설 혁신** 1977년 애플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불려도 충분한 애플II를 선보인다. 잡스는 애플II의 성공으로 1980년 주식공개에서 25살의 나이에 2억5600만 달러 자산의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1981년 IBM은 IBM-PC를 공식적으로 출시하였으며,

빠른 속도로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을 잠식해간다. 매달 10만대가 넘게 팔려나간 애플II 덕택으로 1983년 애플은 10억 달러로 실적을 마감하였지만, 당시 컴퓨터 업계 1위인 IBM은 IBM-PC의 공식 출시 2년 만에 PC 시장의 30퍼센트를 차지하여 결국, 시장점유율 21퍼센트의 애플로부터 1위 자리를 가져오게 된다.<sup>3)</sup> 판매된 컴퓨터 숫자만 볼 때 1982년 애플II의 판매량은 28만대였고 IBM-PC 계열은 24만대였으나, 1983년에 애플II는 42만대, IBM-PC 계열은 130만대가 되었다.<sup>4)</sup>



1983년 당시 IBM은 PC 사업진입 2년 만에 애플II의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2년 후 안드로이드 계열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든다. 자료 출처, PC 판매수 : 아이작슨 p.266, 스마트폰 판매수 : Wikipedia, smartphone, <http://en.wikipedia.org/wiki/Smartphone>

1) 아이작슨, p.146  
 2) 아이작슨, p.166  
 3) 이치비아, p.145  
 4) 아이작슨, p.266

# Column

1983년 당시, 애플에게는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장악한 후발자 IBM-PC의 대세론을 정면 돌파할 혁신적 제품이 요구되고 있었다. 즉, IBM-PC의 확장세는 PC 창조자인 애플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젊은 스티브잡스는 개의치 않았다. ‘매킨토시’가 곧 이 상황을 뒤엎어 컴퓨터 업계의 ‘괴물’을 곧 물리칠 것이기 때문이다.

## 잡스, 최고의 기조 연설로 매킨토시를 소개하다

스티브잡스는 1983년 10월 하와이에서 열린 애플 세일즈컨퍼런스에서 IBM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각오하며 무대에 올랐고 맘속에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매킨토시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당시 IBM은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가는 혁신적·다국적 기업으로 ‘빅블루(Big Blue)’라는 사랑스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 비록 애플社(당시 애플컴퓨터)가 Apple II로 개인용 PC 시장을 열었지만 당시 사업규모는 IBM의 10분의 1 크기 밖에 안 되는 회사였다. 1981년 8월 IBM-PC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자 같은 달 애플社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IBM을 환영한다”는 전면 광고를 냈다. 이것은 IBM의 유일한 경쟁사로서 애플을 부각시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서부 해안에 기반을 둔 애플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를 미국 동부에 거점을 둔 보수적 색채의 IBM과 대비시켜 반사이익을 얻고자 했을 정도로 당시의 IBM의 브랜드는 대단했다.

1983년을 풍미하였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한 ‘영화, 플래시 댄스’의 주제곡 ‘What a feeling!’에서 노래 가락과 가사의 일부를 차용한 애플의社歌(Apple Corporate Song)의 배경 속에 청년 CEO 스티브잡스를 비추는 조명이 밝아진다.



28세의 청년 CEO스티브잡스가 1983년 세일즈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동영상 소스: <http://www.youtube.com/watch?v=ISiQA6KKyJo>

안녕하세요?

스티브잡스입니다.

때는 1958년. IBM은 xerography(복사기술)라는 신기술을 막 발명한 헛병아리 기업을 인수할 기회를 날려 먹었습니다. 2년 후 Xerox 가 탄생했고, IBM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10년 후, 60년대 후반, DEC을 비롯 여러 기업들이 미니컴퓨터를 발명합니다. IBM은 진지한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미니컴퓨터를 무시합니다. 자기들 사업에 별로라고 생각한 것이죠. DEC이 수 억 달러 회사로 성장하고 나서야, IBM은 미니컴퓨터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제 10년이 지나 70년 후반입니다. 1977년, 서부해안의 애플이라는 헛병아리 회사가, 오늘날 알다시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PC) 애플II를 발명했습니다. IBM은 진지한 계산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PC를 무시합니다. 자기들 사업에 별로라고 생각한 것이죠.

80년 초반, 81년. 애플II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가 되었고, 애플은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3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50개 이상의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경쟁하는, 1981년 11월에야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IBM-PC를 가지고 뛰어듭니다.

1983년, 애플과 IBM은 업계 최고의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각



**“...IBM wants it all, and is aiming its guns at its last obstacle to industry control, Apple. Will Big Blue dominate the entire industry?  
...Was George Orwell right?”**

- 스티브잡스연설중에서



각 약 10억 달러의 PC사업 매출을 올렸습니다. 1984년에는 두 회사 각각이 R&D와 TV 광고에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 2억5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최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회사는 파산하고, 다른 회사들도 생사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1983년 업계들의 전체 손실은 애플과 IBM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제 1984년입니다. IBM은 전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이야말로 IBM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 처음에는 IBM을 쌍수 들고 환영하더니만, 지금은 IBM이 지배·통제하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자유를 보장할 유일한 세력인 애플로 다시 절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IBM은 전부를 원하고, 업계를 지배하는데 최후의 장애물에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입니다!

정말 빅블루(IBM의 애칭)는 컴퓨터 업계 전체, 정보화 시대 전체를 지배하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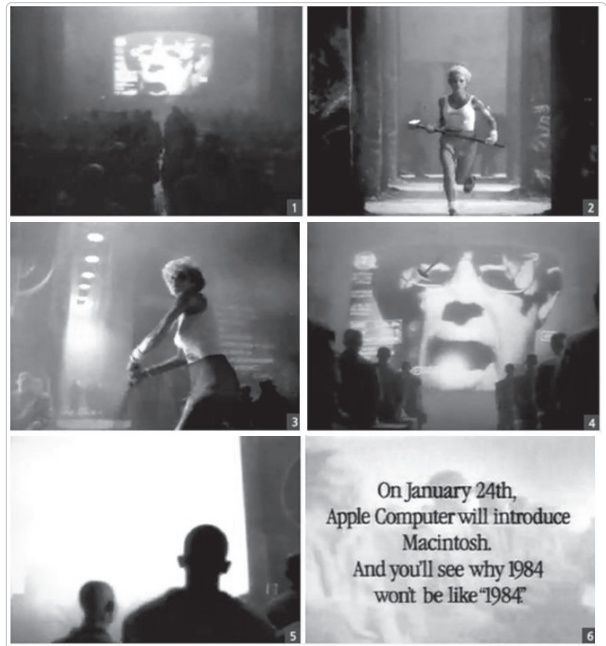
이때, 청중은 한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외치고, 잡스는 다시금 연설을 이어나갔다.

“다가올 1984년은 조지오웰의 ‘1984’ 처럼 될까요?”

이윽고, 청중에게 한편의 동영상 소개된다. 이 동영상은 IBM을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독재자 ‘빅 브라더’로 비유하는 그 유명한 ‘1984’ 광고로서 애플의 신제품 매킨토시를 소개하고 있다.

## 이 시대 최고의 광고가 탄생하다

잡스는 매킨토시 출시와 관련하여 제품만큼이나 혁명적이고 기발한 광고를 원했고, 이 업무를 맡게된 Ciat/Day 광고회사의 Lee Clow(Creative Director), Steve Hayden(copy writer)과 Brent Thomas(art director)는 한참 전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을 모티브로 삼아 “왜 1984년은 1984와 다르기”라는 문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잡스는 이 문구를 매킨토시 출시 광고에 사용하기로 밀어붙였다.<sup>5)</sup> 광고사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의 감독 Ridley Scott에 제작을 의뢰한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에 IBM-PC로 비유한 매킨토시 TV 광고는 역사상 가장 걸출한 광고로 여겨지며 많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그림 출처 : 네이버캐스트, '매킨토시')

# Column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화면은, 거장 Fritz Lang 감독의 1927년 고전 SF영화 ‘metropolis’의 초고층 빌딩숲이 연상되는 회색빛 문명 세계를 비춘다. 초고층의 빌딩속에서 유령같이 치장한 군중들이 무기력하게 강당으로 향하고 강당에 몰려 앉아 ‘빅브라더’가 연설하는 거대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본다. 매킨토시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달려나오고 경찰 무리가 뒤를 쫓는다. 강당으로 뛰어 들어온 여성은 들고 있던 해머를 빅브라더가 나오는 화면을 향해 던진다. 눈부신 섬광을 일으키며, 멘트가 흘러나온다.

“1월 24일, 애플컴퓨터 사에서 매킨토시를 선보입니다. 1984년이 ‘1984’ 과 왜 다른지 알게 됩니다.”

해머를 던지는 여자의 유니폼에 그려져 있듯이 무명의 여전사는 곧이어 나오는 매킨토시를 의미하고 ‘빅브라더’는 누구인지 누가 봐도 자명하다. 멋지고 반항적인 여전사(애플)만이 세계를 통제하려는 사악한 거대 기업에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의도한 것이다.



1984년 매킨토시의 등장으로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운영체제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사진출처: 네이버캐스트([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499](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5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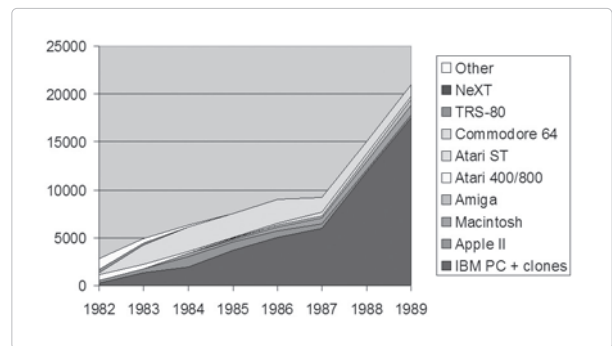
## 광고는 광고일 뿐

애플의 1984 광고는 시청자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

았다. 광고역사에서도 분수령이 되는 걸작으로 2004년에 업데이트되어 제작될 정도였다. 2004년 버전에서는 해머를 든 여자가 iPod에 연결된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sup>6)</sup>

그러나, ‘1984 소설’의 저작권 소유권자는 애플의 광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더 이상 추가 방영을 금지하라는 편지를 애플사와 광고회사에게 보냈다고 한다.<sup>7)</sup>

추가방영 없이 1회만 방영된 광고는 대성공이었으나, IBM-PC의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순 없었다.



매킨토시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탑재에도 불구하고, 매킨토시는 시장에서 미미한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자료 출처: <http://jeremyreimer.com/postman/node/329>

애플컴퓨터는 1984광고에서 애플사를 파괴적·독창성의 회사로 나타내고자 했던 반면에, IBM은 군중을 IBM-PC에 순응(conformity)시키려는 지배자 ‘빅브라더’로 묘사하여 IBM과의 선명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 누가 ‘빅브라더’였을까?

과연 매킨토시가 독창적인가? 통제자들에 맞서 자유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인가? IBM-PC와 대비하여 보면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싶다. 일단 잘 알려진 대로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는 제록스 연구소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매킨토시에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추가의 카드를 끼워 넣을 확장 슬롯이 없었고, 잡스는 오히려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려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는 열리지 않도록 특수한 도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여기서, 배터리도 착탈하기 불가능하고 부품이 고장나면 제품을 통째로 교환해 주는 아이폰이 연상될 것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폐쇄적이고 통제된 시스템이었다.<sup>8)</sup>

매킨토시에 탑재될 3.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는 당시 소니에서 막 개발되었으나, 잡스는 담당 엔지니어의 주장을 묵살하고 일본의 소규모 공급 업체인 알프스와 공급 계약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알프스사는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였으나 담당 엔지니어의 유연한 재치로 소니의 부품이 탑재될 수 있었다.<sup>9)</sup> 잡스는 엔드투엔드(end-to-end) 통제를 원하였고 매킨토시 운영체제의 라이선스를 다른 장비 제조사들에게 제공하여 매킨토시 호환기종을 만들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에도 단호히 거부했다. 매킨토시는 잡스만의 표준에 부합하는 통제된 환경에 머무른다는 것이다.<sup>10)</sup> 누가 조지오웰의 빅브라더일까? 오늘날 애플사의 신제품이 발표되는 날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줄서서 기다리는 애플의 광팬들을 빗대어 애플의 '1984 광고'는 '아이러니'라는 기사도 있다.<sup>11)</sup>

매킨토시의 출시 때 달궂진 흥분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1984년 후반기부터 매킨토시의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한다. 매킨토시의 당시 가격은 비쌌고(US\$ 2495)<sup>12)</sup>, 매킨토시의 그래픽시스템은 화려했으나 속도가 심각히 느렸다. 무엇보다도 그래픽을 처리함에 있어, 텍스트 기반의 IBM-PC 보다 20-30배의 주메모리 즉, 디램이 필요했으나, 그 용량은 128K로 한정되어 극도로 느렸다. 내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었고, 냉각 팬도 구비하지 않아 여러 부품들이 쉽게 고장났다.<sup>13)</sup>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다는 것은 대

중화의 커다란 한계점이었다.<sup>14)</sup> 역설적으로 이것은 GUI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그래머들에게 GUI는 기존의 텍스트 모드와 명령 입력 방식으로부터의 차원이 다른 개발 플랫폼이었고, 이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게 GUI 소프트웨어는 큰 도전으로 GUI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부재로 이어진 것이다. 일종의 선발자의 불이익(First Mover's Disadvantage)인 셈이다.

1984년 6월, 매킨토시의 실적은 실망스러웠고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다. 1985년 잡스는 펍스사에서 자기가 직접 CEO로 영입한 Sculley로부터 애플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즉, 매킨토시를 출시한지 2년도 안되어 애플에서 축출된 것이다.

## 창조와 모방의 혁신 (First Mover & Fast Follower)

인류의 삶을 바꾼 천재·혁신가·그루(guru)·예술가인 스티브잡스의 예술적 혼과 정열의 산물인 매킨토시는 완숙된 아름다움 및 인간중심적 휴먼인터페이스의 탑재에도 불구하고, 애플사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분해해보고 비웃었던<sup>15)</sup> IBM-PC에 그 패권을 넘겨줘야 했다. 잡스에게 컴퓨터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준 제록스

5) 아이작슨, p.268

6) 동영상 소스: <http://www.youtube.com/watch?v=Zew1bb5Sxk4>

7) WIKIPEDIA, 1984 (advertisement), [http://en.wikipedia.org/wiki/1984\\_\(advertisement\)](http://en.wikipedia.org/wiki/1984_(advertisement))

8) 아이작슨, p.270.

9) 아이작슨, p.242-244.

10) 아이작슨, p.232.

11) "Remembering the '1984' Super Bowl Mac ad", CNET 2009년 1월 23일 기사, [http://news.cnet.com/8301-13577\\_3-10148380-36.html](http://news.cnet.com/8301-13577_3-10148380-36.html)

12) WIKIPEDIA, Macintosh 128K, [http://en.wikipedia.org/wiki/Macintosh\\_128K](http://en.wikipedia.org/wiki/Macintosh_128K)

13) 아이작슨, p.309.

14) 이치비야, p.156.

# Column

의 '마우스를 이용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훗날 인텔의 강력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80386에서 구현되는 MS사의 윈도우(windows)에서 대중화된다. 물론, 이 운영체제가 매킨토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킨토시는 비록 전자출판업계와 소수의 매니아들의 영역에서는 IBM-PC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였으나, 개인용 PC에서는 IBM-PC가 표준이 되었다. 그야말로 IBM-PC는 PC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다음의 기업들이 IBM-PC의 열린 표준 공간에서 혁신적 기술 또는 경영으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들은 실리콘 밸리 중심의 미국 IT 산업을 도약시켰다.

1) 마이크로소프트사 (MS)의 IBM-PC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켰고, 그 자신은 한동안 미국 최대의 기업이 되

**"...My approach to the PC market has been the same from the very beginning. ...is to create the standard for the industry..."**

- 빌게이츠, 잡스와대담중에서

었다. 어떤이는 당시 1984 광고의 빅블루는 IBM이 아니고 MS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인 주장일 뿐이다. 빌게이츠는 1991년 포춘지에 실린 잡스와의 대담에서, "모든 PC 제조업체와 PC-소프트웨어 회사는 MS라 불리는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잡스가 빈정거렸을 때, 다음과 같이 잘라 말했다고 한다. "그건 아주 큰 구멍입니다. 저의 접근 방법은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습니다. 업계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sup>16)</sup>

2) 인텔의 1980년대 CEO '앤드그로브(Andrew grove)'는 사업의 초점을 D램에서 IBM-PC에 적합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야로 옮겼고, 이제는 정치경제학 용어로 파생되기도 한 80286, 80386 등 시대를 풍미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출시하였다. 회사는 급성장하여 세계 1위의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제조 기업은 미국 반도체회사에게도 속된 말로 '넘사벽'이었다.

3) 삼성 : 19970년대 IBM에서 D램이 발명되고 이를 처음으로 상품화한 것은 당시 벤처기업 인텔이었으며 이때부터 D램 중심의 반도체치킨게임이 시작되었다. 당시 반도체 제조 산업의 패권은 미국에 있었으나, 1980년대의 반도체 제조산업은 NEC, 도시바, 히다치, 내소날 등 일본 대기업 주도하였다. 1980년대 일본이 대형 컴퓨터에 적합한 고품질주의의 D램 반도체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국의 삼성은 IBM-PC에 적합하면서 저렴한 비용의 D램 분야에 집중하여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sup>17)</sup>

4) 휴렛팩커드(HP), 델 및 컴팩 : 잡스는 처음부터 컴퓨터를 소비자 제품(consumer product)으로 목표로하였으나 애플 CEO Sculley는 매킨토시를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처럼 사무처리용으로 시장을 생각했다. 18잡스는, 1977년의 애플은 물론 이후 모든 제품에서 항상 개개인이 자유롭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제품을 지향했고 이러한 놀라운 선지자적인 비전은 오늘날의 아이팟, 아이폰 및 아이패드는 물론 1984년의 매킨토시에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잡스의 이러한 컴퓨터에 대한 철학은 오늘날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1980년 당시에는 획기적이나 시장과 동떨어진 생각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잡스의 생각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갔다. 즉, 매킨토시의 컴퓨터 철학과 간결미의 외관상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휴렛팩커드(HP), 델 및 컴팩으로 대표되는 IBM-PC 호환 컴퓨터 제조 회사는 저렴한 가격 또는 혁신적 유통 정책을 펼쳐나갔고, IBM-PC를 그야말로 소비자용 제품으로 대중화시켰다. 1984년의매킨토시의 가격은 \$24950이지만, 현재 \$300 정도면 당시의 매킨토시 보다 천배 이상의 빠른 연산 성능의 PC를 구입할 수 있다.

##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그리고 특허법 제1조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저야한다."

미국의 경영이론 전문가 비벡와드하(Vivek Wadhwa)는 워싱턴포스트에 쓴 칼럼19에서 애플이 특허소송에

서 승리하는 것은 기업혁신을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혁신은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얻고 지속적으로 재 창조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IT 기업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 전쟁이 아니라 혁신을 계속하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측은 오히려 미국 특허제도나 배심원제도를 문제삼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록 애플II보다 4년 늦게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IBM-PC 기반의 열린 표준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은 MS, Intel 및 Dell 등의 걸출한 실리콘밸리기업들의 활약에 기반한 미국의 IT 산업을 일으켰고, 이는 전자 왕국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 1위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1980년대의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고 미국 경제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게된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다른 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로부터의 모방의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창조’ 보다 중요할 순 없다. 그 창조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모방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자(first mover)의 길은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의 길이고, 모방자(fast follower)는 그 항로를 대중화시킬 뿐이다. 매킨토시가 출시될 때의 소비자용(consumer product) PC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마케팅하는 것은 PC 업계 혹은 스마트폰 업계의 상식이다.

현실 산업 · ‘발명을 잘하는 능력’ 과 ‘이를 사업화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대중화하는 능력’ 과는 별개임이 분명하다. 사업화 능력의 부족으로 좋은 발명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을 뿐더러, IBM-PC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의 모방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제1조(목적) 이법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그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의 보호’ 와 ‘이용의 도모’ 라는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두 가지 명제 즉,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특허법의 목적<sup>20)</sup>을 조화로운 합명제로 실현하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 심판 및 산업정책은 물론 특허 분쟁 관련 사법판단에서도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참고자료》

1. 다니엘이치비아, “스티브잡스 네 번의 삶”, 에이콘, 2011년 11월
2. 윌터아이작스, “스티브잡스”, (주)민음사, 2011년 10월
3. 제프리 영과 윌리엄사이먼, “iCon스티브잡스”, (주)민음사, 2005년 8월
4. 레오짱 · 베스트트랜스, “스티브잡스의 세상을 바꾼 명연설”, 미래에듀, 2011년 11월
5. 휴먼스토리, “스티브잡스의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미래북스, 2011년 10월
6. 유노가미다카시, “일본 반도체 패전”, 성안당 2012. 12 |



■ 부 경 호 사무관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15) 이치비아, p.128.  
 16) 이치비아, p226  
 17) 유노가미다카시, 일본 반도체 패전, 성안당  
 18) Discovery Channel, Adam Savage, Jamie Hyneman, “iGenius: How Steve Jobs Changed the World”, 2011.11  
 19) Vivek Wadhwa, “Why Apple needs to lose the Samsung appeal”, Washington post, 8월31일자.  
 20)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12.4.

## 새국면 접어든 삼성 – 애플 특허전



### 애플, 둥근 디자인 특허 일부 포기… 소송 새 국면

미국 법원에서 삼성에 10조가 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안긴 애플 특허 2개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과 애플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월 27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D677 특허의 유효기간을 D087 특허 기간과 같도록 조정하는 '특허 권리 포기(Terminal disclaimer)'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과 관련된 D677 특허가 디스플레이와 홈버튼 모양 등을 규정한 선행 특허인 D087과 겹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특허 권리 포기 신청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특허가 당장 소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D677의 특허 유효기간을 1년 줄여 D087과 같은 때에 소멸하도록 하는 조치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중복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고, 중복 신청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미리 없애 특허 무효 판정을 회피하려는 포석이다.

D677은 지난 8월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큰 영향을 끼쳤던 항목이다. 당시 평결 전체 배상액인 10억5000만달러 중 D677 침해에 따른 배상액은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절반인 5억2000만 달러나 된다.

결국 삼성이 애플에 최종적으로 패한다 해도 지불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재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D677의 중복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특허 중복 논란과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맞다는 주장을, 삼성전자는 D677이 무효라면 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이론상 평결 당시 배상액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면서도 “애플이 평결 당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삼성의 ‘이중특허’ 주장 의식

애플은 특허 포기 선언을 했지만 D677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복 특허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애플은 2009년 5월26일 D087 특허권을 취득했으

며, 그로부터 13개월 뒤인 2010년 6월 29일에 D677 특허권을 받았다.

D677 특허권 도면에는 아이폰으로 추정되는 단말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디자인 특허권 관련 문건에는 아이폰 정면 및 후면, 그리고 측면 디자인 등 총 8개 그림을 담겨 있다.

반면 D677보다 앞서 취득한 D087 특허권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 관련 디자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삼성은 애플과 재판 과정에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을 규정한 D677은 D087 특허권과 중복되는 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특허법 제 101조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특허권이 두 개 존재할 경우 후출원 특허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중에 출원한 D677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다.

애플이 이번에 D677에 대한 존속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이런 점을 때문인 셈이다.

미국에선 중복 특허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나중에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후순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선행 특허권과 함께 만료된다.

미국에선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D677은 D087의 특허권 만료 시한인 2027년 7월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D677은 2008년 11월18일 출원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8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11월9일(현지시각)으로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

## Column



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자체 무효화, 바운스백 특허(러버 밴드 특허, 특허번호 381)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무효 결정 등을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미국 영구 판매 금지 등이 문서에 담았다.

지난 8월24일 배심원 평결은 애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났다. 배심원들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983이 유효하고 삼성전자는 의도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 상용특허 6개 중 5개를 침해했으며 애플에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 특허 중 유효한 것은 UMTS 표준 관련이지만 이를 내세우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심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재판에서 배심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한다.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배심원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저 개인파산을 한 경험이 있다.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다.

‘시게이트 소송 → 개인파산 → 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 → 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사실을 미리 밝혔는데도 배심원단에 뽑혔다면 하는 수 없는 문제지만 감춰던 탓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애플이 이를 미리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담당판사는 오는 12월6일 JMOL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배심원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반론과 자사 특허에 대해 다시 입증해야 한다. 배심원이 바뀔 뿐 같은 평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흐름은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치열하다.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2012. 12 |



■ 송영록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 발명역사 속으로

## 타자기

끈끈한 우정으로 탄생한 사무기기의 혁명

**타**자기는 1714년 헨리 밀, 1829년 오스틴 버트, 1833년 프리젠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타자기들은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컴퓨터의 등장 전까지 대표적인 사무기기로 주목받았던 타자기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L. 솔즈(Christopher L. Sholes, 1819~189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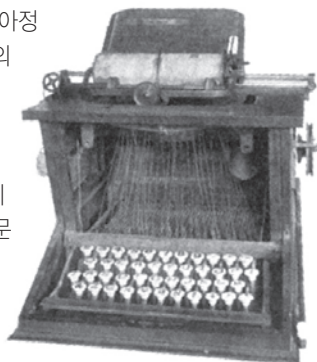
철공소 공원이었던 솔즈는 동료인 그리든과 더불어 '책 페이지 번호 달기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그리든은 솔즈에게 번호달기 기계로 숫자와 함께 글자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인쇄소를 경영하는 사무엘 소울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는데, 타자기의 견구 및 제작은 솔즈가, 그리든과 사무엘은 보조 및 후원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솔즈의 연구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목재의 실물 모형을 만들어 1868년 6월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었다. 이 제품은 잉크 리본을 이용한 타자기 특허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제품이었다. 솔즈는 고민 끝에 현재와 같은 왼쪽 상단에 'QWERTY'를 배열하고 4개 열의 자판을 배치하고 타자기로 개량했다. 이 타자기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타자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솔즈는 두 친구와 상의한 끝에 당대 최고의 실업가인 딘스 모어와 요스트에게 1만 2000달러를 받고 타자기의 특허를 팔았다. 솔즈의 타자기는 1874년 재봉틀과 총기 제작사인 '레밍턴 총기회사'에 의해 생산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이후 1920년 전동식 타자기 발명에 이어 1961년부터는 수정, 재생이 가능한 기억장치를 갖춘 타자기가 나오면서 타자기는 사무혁명의 대명사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 이후 클로버(경방공업주식회사)와 마라톤(동아정공)에서 생산, 판매되다가 컴퓨터의 등장으로 1996년 국내 타자기 생산은 중단됐다.

한편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타자기를 생산하던 인도의 '고드레지 엔드 보이시' 사는 2011년 4월에 문을 닫았다.



▲ 솔즈의 타자기(1872)



## 청진기

내과질환의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

**의** 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진기는 환자를 진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료 기구다.

청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르네 라에네크(Rene Laennec, 1781~1826)이다.

그는 프랑스 브르타뉴의 캥페르에서 태어나 1801년 샤리테 병원학교에 들어가 의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였다. 후에 전문 병리학자가 된 그는 35세 때 프랑스 루브르궁의 안뜰을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긴 나무막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무막대를 서로의 귀에 대고 재잘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라에네크의 머리속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옳지, 저런 식으로 심장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진찰실에서 종이를 말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종이를 말아 묶어 통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환자의 심장에 대어 보았는데, 이것이 청진기를 사용한 최초의 청음진찰이었다(1816년).

그는 이 발명품에 Stethoscope(그리스어로 '가슴을 본다'는 뜻)라는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는 목재통으로 개량해 사용했다.

한편, 그의 청진기 발명은 모든 내과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라에네크의 청진기(1816)

#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주는 교훈

기술혁신을 위한 적절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2011년 4월 미국에서 애플의 제소로 시작되었던 전세계적인 특허전쟁이 올해 들어서 하나둘씩 그 중간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국내에서의 판결은 삼성과 애플 상호 특허침해로 결론이 났다.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배상금액은 불과 4천만 원이었고,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배상금액은 이보다 더 적은 2천5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했다. 1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삼성이 애플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었다.

국내 판결의 경우 사실 “일부청구”라는 소송제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입은 손해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21세기 최고의 히트상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으로는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 보다 다른 기업의 좋은 기술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수천만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무엇하러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 내겠는가?

반면, 미국의 배심원 평결과 같이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 혁신은 모방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아이작 뉴턴도 “만약 내가 누구보다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 만개의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의 경우, 모든 특허를 미리 확인하여 회피하거나 모든 특허의 특허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불과 수개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1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좀 더 개선된 제품은 개발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특허제도가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를 엄청난 손해배상이 두려워 누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개선된 제품을 내놓겠는가?

이렇듯 한국과 미국의 손해배상액의 극명한 차이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돌이켜보게 하는 좋은 교훈을 준다. 침해소송의 대리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손해배상금은 독점배타권 부여라는 특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반면 제품에 있어서 개별 기술과 디자인의 기여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금은 다른 기업의 제품개선과 기술혁신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혁신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적절한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최근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논의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으니 어서 빨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히고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반은 물론,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2. 12 |



■ 주 한 중 특허금융상담관/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싸이(PSY)’는 세계 각국에서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성명상표를 둘러싼 상표법상 문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싸이’가 이번에는 상표 등록 문제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모으고 있다. 2012년 11월 27일 한경닷컴의 기사<sup>1)</sup>에 따르면, 국제 가수 ‘싸이’의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상표 등록도 국내 이외에 현재 활동 중인 세계 각국에 대해서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게재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잘나가는 연예인 소속회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싸이의 영입 후에 바로 상표 등록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상표 검색을 해보았으나, 놀랍게도 한글 명칭 ‘싸이’와 영문 명칭 ‘PSY’는 최근 ‘강남스타일’이 뜬 이후인 2012년 8월 14일에야 상표 출원이 되었다.

번호	권면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무선권주장번호 무선권주장일자	상대 상품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싸이	4020120051263 (2012.08.14)				출원 28 09 25	주식회사 와이지 엔터테인먼트
2	PSY	4020120051262 (2012.08.14)				출원 28 09 25	주식회사 와이지 엔터테인먼트

'성명, 명칭, 상호, 예명 등' 또는 이들의 '약칭' 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 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싸이' 의 경우 이미 저명해진 '예명' 이므로 싸이(본명 : 박재상)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싸이' 를 상표 등록받

우려되는 것은 '싸이' 나 'PSY' 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출원 또는 선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싸이' 의 경우 워낙 저명한 예명이어서 후술하는 상표법 규정에 의해 타인의 상표 등록이 배제되었으나 영문 명칭 'PSY' 의 경우에도 한글 명칭과 같이 저명성을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필자 주 : 이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싸이 본인이나 소속사 입장에서 매우 예민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지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쨌든 화두로 제시한 '싸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접고, 본지에서는 '싸이' 와 같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성명을 상표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상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예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 의

을 수 없다. 사실, 현재 저명한 연예인들의 예명이나 성명을 검색해 보면 의외로 상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기 규정 때문에 이미 유명해진 스타들의 경우 상표 출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명한 성명 또는 예명을 등록 받을 수 없기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개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명성' 인데 이 저명성의 정도는 사회관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상표심사기준). 성명의 저명성 여부는 그 성명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내 일반 수요자 중 어느 누구에게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가 심사숙고하거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바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저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바로 직감이 어렵다면 그만큼 저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저명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본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가수 Brown Eyes(브라운아이즈)의

1) 뉴스링크출처: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1&c3=00&nkey=201211271323551](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1&c3=00&nkey=201211271323551)

## Column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법원은 Brown eyes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에 종사하며 인터넷에 ‘World of R&B’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윤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 3월경부터 그의 음악활동을 함에 있어 ‘Brown Eyed’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가수인 소위 양창익, 유나얼 등은 그들이 주축이 되어 ‘브라운 아이즈(Brown Eyes)’라는 이름의 음악그룹을 결성하고 2000. 7.경 인터넷에서 그들의 음악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무료 배포한 바 있고, 그 해 12월 경에는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제1집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2001. 6. 7.경 ‘브라운 아이즈’의 뮤직비디오가 해외 단편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라는 신문 보도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브라운아이즈(Brown Eyed)’나 혹은 ‘브라운 아이즈(Brown Eyes)’의 주지 정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와 유사한 저명한 명칭이 존재한다는 아무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포함하는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2005.02.23. 선고 대법원 2004허(원)6408)”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가수 ‘Brown Eyes’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하여 저명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법원은 본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상기 언급한 저명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Brown Eyes’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 수요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저명성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성명이나 예명과 관련한 상표를 일시적인 유명세나 인기가 있다고 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출원을 차일피일 미

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기와 유명세의 정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의 저명성을 요구하므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스타급의 반열에 오르지 않는 이상 상기 규정만 믿고 상표권 확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흔한 성 또는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만약 연예인이나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상표출원하고자 할 때 그 성명 상표가 너무 흔한 성이나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다. 예를들면, 실제로 김박사, 왕박사, 서가네, 최씨네, dr. Kim 등의 상표는 특허청에서 거절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흔한 성이나 명칭을 단순히 표시하여 이루어진 상표 등을 출원할 때는 등록 가능성 여부를 상표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성명상표의 취급

패션이나 뷰티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자이너의 성명을 그대로 브랜드로 런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디자이너의 성명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명보다는 음절수가 긴 경우가 많아 외국인 디자이너 성명의 일부만 유사한 상표를 어떻게 취급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전에는 외국인 디자이너 성명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관찰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결하여 상표등

록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에 반해 최근 상당 수의 판례는 상표의 표장이 사람의 성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성명의 일부만 유사한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예들이 많아졌다. 다음은 이와 같은 최신 판례의 경향을 볼 수 있는 판결문의 발췌 부분이다.

상기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과 활발한 국제

**(2008.10.24. 선고 2008허7959 판결사건 개요)**

- 이 사건 출원상표 : **NICOLE MILLER** (지정상품 : 유아복, 청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양말, 오버코트, 스포츠셔츠, 모자 등)
- 선등록상표 1 :  (지정상품 : 와이셔츠, 넥타이, 모자 등)
- 선등록상표 2 :  (지정상품 : 와이셔츠, 넥타이, 모자 등)
- 선등록상표 3 : **NICOLE SPORTS**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포츠용 고글, 안경알, 안경집, 안경테, 스포츠용보호헬멧, 망원경, 카메라, 휴대용 전자계산기)

2008허7959(심결위소, 비유사) : 2008. 10. 24.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NICOLE MILLER'는 비록 두 개의 영어단어로 결합된 것이나, ① 그 호칭이 '니콜 밀러로 네 음절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은 편인 점, ②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화장품과 수입 의류 등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니콜 키드먼', 가수 '니콜 리치, 작가 '아서 밀러', 영화감독 '콜로드 밀러' 등과 같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외국의 저명인사를 통해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사람의 성명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상표의 표장이 사람의 성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늘날 인터넷의 이용과 활발한 국제교류로 인하여 일반 거래계에서 주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짧은 시간 내에 전세계로 유통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의 성명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외국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에도 그 단어 중 일부가 국내에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명만으로 구성된 표장을 국내에서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방화 시대의 상표정책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거래계에서 그 표장 중 일부만으로 호칭·관념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전체로서 호칭·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중 일부만으로 호칭·관념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교류, 그리고 국가 전반적인 외국어 능력의 향상 등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의 저명인사, 연예인, 디자이너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외국인의 이름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성명(full name)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오

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명의 일부가 국내에서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호칭·관념되는 성명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행상표와 구별된다면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고 보아 등록을 허여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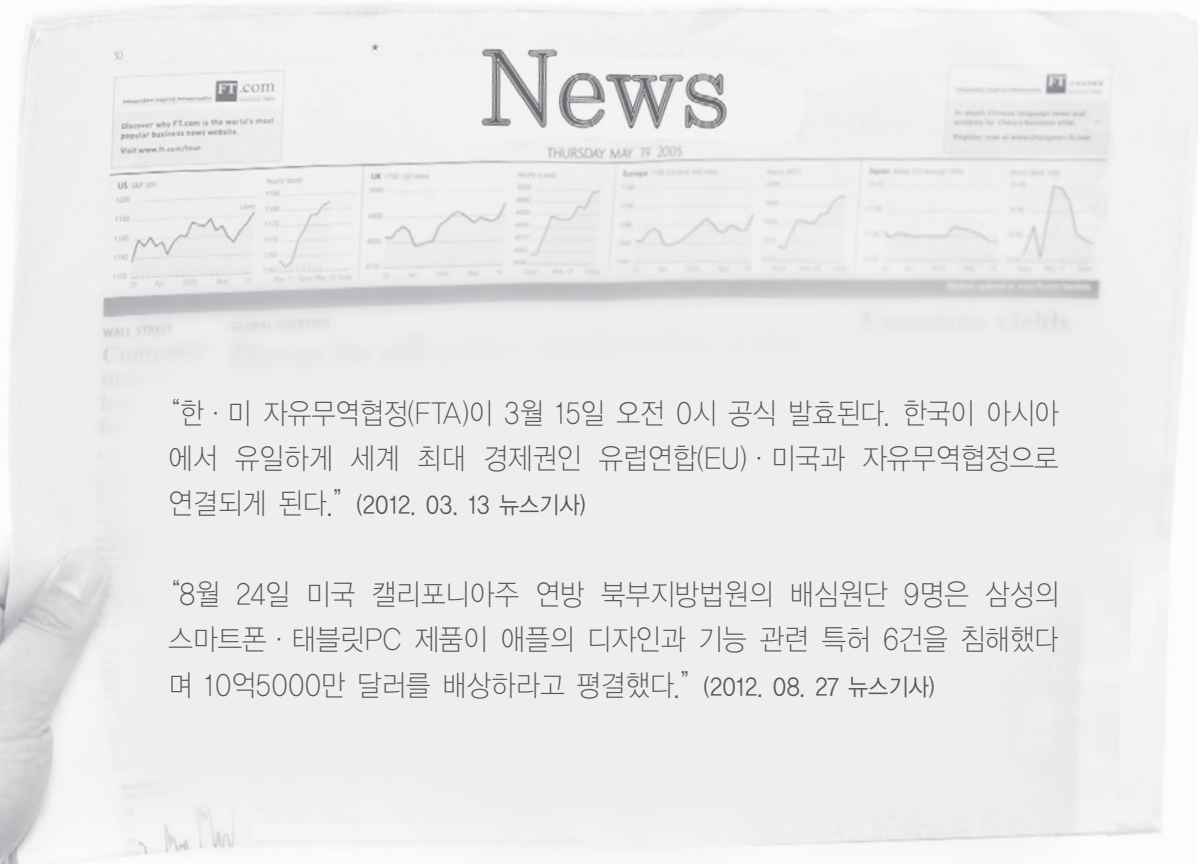
따라서, 외국인의 성명을 하나의 브랜드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성명의 일부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표권 확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구하여 성명상표권의 확보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성명 상표권은 다분히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성명은 산업 파급력이 높아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성명 상표는 일반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칫 제3자에게 성명 상표가 선점되어서 유명인 본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명성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일반소비자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확보와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2. 12 |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 FTA시대, 지식재산을 포함한 융합경쟁력으로 승부하자



**약**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애플의 승소’라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두 사건을 두고, 세계무역의 흐름에 대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세계 경제의 침체는 불확실한 세계 통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양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 체결을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되어 왔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소송에서는 美법정이 한쪽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애플이 승리를 거두자,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국기업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사건을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묶어 주는 공통요소가 바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이다.

FTA 체결을 통해 '국가 단위의 관세장벽'이 철폐되고 무역자유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개별 기업단위의 특허장벽'이 더욱 부각될 수 새로운 통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FTA 체결 초기에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우위가 FTA 체결에 따른 원가경쟁력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 메커니즘에 기초한 지식재산 경쟁력이 경쟁우위의 새로운 핵심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 국내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무역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애플의 승소'에서 보듯이 FTA 체결에 따른 이득을 우리 기업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애플의 승소'라는 각각의 사건을 통해, 글로벌 경쟁과 개방을 키워드로 하는 FTA 시대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원가 경쟁력, 제품 차별화 경쟁력과 지식재산 경쟁력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융합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FTA 확산에 따른 기회요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원가 경쟁력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패막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확산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은 자명하므로 FTA 확산에 따른 이러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가 경쟁력, 제품 차별화 경쟁력,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은 기업의 사업전략, R&D전략, 지식재산전략과의 쌍방향적 보완관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논의 수준도 주로 FTA 체결에 따른 법 규정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기업의 경쟁력 및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이 지식재산을 포함한 '융합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FTA 생태계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트라이앵글(Competitiveness Triangle)<sup>1)</sup>'의 시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FTA 지원사업, R&D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트라이앵글(Competitiveness Triangle)<sup>1)</sup>' 관점에서 지식재산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2. 12 |



■ 황진원 전문위원(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1) '경쟁력 트라이앵글(Competitiveness Triangle)'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인 원가 경쟁력, 제품 차별화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경쟁력을 포함하여 상호 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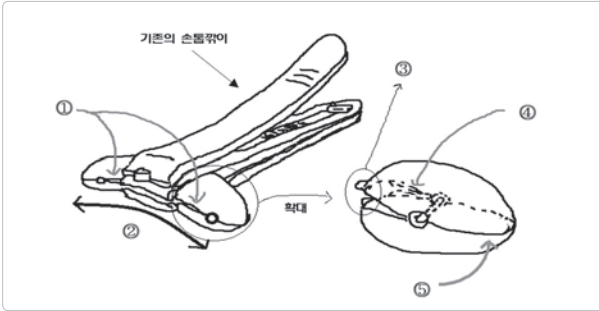
##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발명 길잡이, YIP

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발명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발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YIP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은(이하 YIP)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다. 본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에 위치한 약 6,000평 규모의 2011년 3월 1일 개교한 신설 과학고이다. 다른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점은 천체망원경, 초고속카메라,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의 첨단기자재 및 다양한 발명공작기계가 구비된 발명공작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도한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학교 시절 학급에서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이었다.

본교는 2년 연속으로 YIP 참가팀으로 선발되어 참가하고 있으며, 전교생들이 YIP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지도한 팀은 후원기업의 제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YIP를 준비하면서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지인욱 학생의 불편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모닝글로리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었다. 지인욱 학생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을 운영하셨고,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로 활동하셔서 어린 학생들이 붓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음을 알고 지인욱 학생에게 초등학교 시절 불편한 경험을 개선해 보라고 했다.

지인욱 학생은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3명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지도교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러 찾아왔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림1〉 손톱이 튀지 않는 손톱깎이



라는 걱정이 앞섰다. 이전에 한 학생이 ‘손톱이 튀지 않는 손톱깎이’라는 소재로 경남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하였다가 탈락하고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교사로서 이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입장으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격려하며 함께 도전해보자고 했다.

최근 외부 대회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입학사정관 입시지도에 대비한 실적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더불어, YIP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등록되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접이식 3공 바인더』,

〈그림2〉 YIP 집합교육(캠프)



『다색상 수정테이프』, 『세차가 필요 없는 보닛 닦개』, 『하트형 수량조절 물통』 등 다양한 주제를 제출하였지만, 준비할 때부터 좋은 아이디어라고 팀 내에서 판단했던 『하트형 수량조절 물통』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최종 교육 참가팀 선발 공고가 난 시기는 과학고에 입학하여 첫 시험인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여서 참가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었다. 중학교 시절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던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 성적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하여 다소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나 2012년도 YIP에 최종 선발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은 전교생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필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지도교사로서도 매우 뿌듯했다.

어렵게 선발된 YIP 교육 과정은 즐거운 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다. 학생마다 생각의 개인차가 크고, 교과 학습과 R&E 실험 등으로 바쁜 과학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강의를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개선 토론 등을 수행해야하는 YIP 과정 참여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표면화되었다. 급기야는 친한 친구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도교사의 중재로 학생들은 서로 솔직하게 개개인의 생각을 털어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 후 서로 더욱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YIP 과정 중에서 가장 집중력 있게 성장할 수 있던 교육 과정은 캠프형 집합교육이었다. YIP 집합교육 시 외부 해외체험학습으로 인해 하루 늦게 참여하였지만, 먼저 와서 교육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다른 팀 학생들을 보고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가했다. 발명을 통해 사업가로서 성장한 티켓몬스터 이관우 운영그룹장의 강의, 변리사와 후원기업 관계자들과의 교육·컨설팅 등 YIP 집합교육은 모두가 주옥같은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전 인기 선생님의 『생활 속의 발명』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열정적인 강의였다.

YIP 과정 중 특별한 부분은 학생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 Column

〈그림3〉 변리사님의 자문 시간



변리사님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특허 컨설팅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발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학교의 발명교육이 너무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학교 발명교육은 아이디어 산출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중요시하지만, YIP는 거기에 더해 특허 명세서 작성 과정 등 지적재산권 창출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특별했다.

학생들은 YIP 과정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 고안에서부터 특허 출원까지 원스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특허 출원 등의 지재권 창출 과정까지도 큰 거부감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YIP 참여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며 서로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그 의지를 배우게 되었다.

바쁜 학업 중에도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은 2012년

도 YIP 최종결과발표회 시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더욱 잊지 못할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아이디어 신청부터 교육 마무리까지 일 년에 가까운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방법, 특허 출원 등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모두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점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다. 기존의 학교 발명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는 YIP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발명 길잡이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 YIP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YIP는 2009년부터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후원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가치 있는 지식 재산으로 창출해오고 있다. 2012년도 후원기업은 듀오백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한경희생활과학.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발명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도전정신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 상상 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2. 12 |

〈그림4〉 YIP 최종결과보고회 시상식



■ 문 기 철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사



# 발명특허 Report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EU 통합특허법원, 초석을 세우다

예술가명칭인 출원상표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단실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법한정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에 있어서 특허의 진보성 판례 경향

#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특허분쟁에 있어 기업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은 지재권(지식재산권) 확보다. 즉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재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지재권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것이 답일까? 물론 기업이 출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출원을 장려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특허출원이 권리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재권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분쟁을 예방을 위한 지재권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재권 확보 전략의 필요성

지재권을 확보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특허출원을 떠올린다. 그러나 특허출원이 지재권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된 특허 중 심사를 통과한 특허만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 과연 등록특허들은 지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문제는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허가 권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존속기간동안 등록유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제 3자로부터 무효에 대한 제소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



에 따라서 특허는 등록이 무효화 된다. 특히 이처럼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가 될 경우에는 등록유지에서 출원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되어 버린다. 기업은 지재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재권의 확보는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2011년 특허청 통계연감을 살펴보면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건수는 총 708건으로 그 중 374건에 대해 무효화 되었다. 결국 단순한 특허출원은 적절한 지재권의 확보방안이 될 수 없다. 즉 특허분쟁대응을 위해 막연한 특허출원보다는 전략적인 지재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 분쟁을 위해 효과적인 지재권 확보전략은 무엇일까? 마케팅 전략을 통해 알아보자. 마케팅 전략은 상품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이용된다. 마케팅 전략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련정보 수집을 통해 시작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경쟁사 분석, 경쟁 제품의 특징, 가격 정보 그리고 주요 판매처 등과 같이 현재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들이 이용된다. 이 정보들은 분석을 통해서 가공되며 가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사업 시 발생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서 자주 활용된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재권 확보전략 또한 마찬가지다. 효과적인 분쟁대응책을 수립하기위해서 다양한 특허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유사선행기술, 출원인, 권리이전정보, 청구범위 등이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포함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은 마케팅 전략 수립과 마찬가지로 가공과 분석을 거쳐 만들어진다. 2004년 LG전자와 대만의 오수텍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당시 LG전자는 미국 수출 이전에 특허분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시 분쟁소지가 될 기술을 선별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주변기술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전략을 실시했다. 이후

PCS BUS 기술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던 대만의 오수텍사가 LG전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를 제소하였고 LG전자는 수출이전에 확보된 특허권을 통해 해당 소송에 순조롭게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재권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또한 이같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특허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분쟁대응을 위해서는 지재권 확보 전략수립과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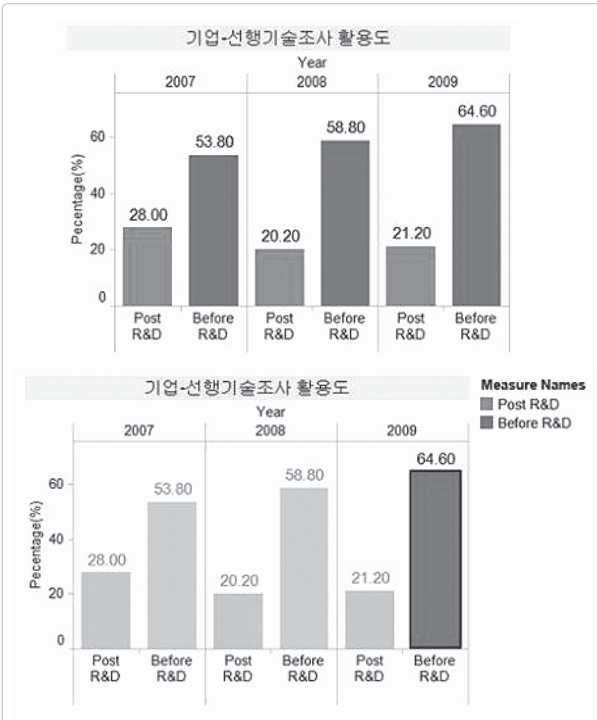
### 특허정보활용에 대한 인식부족

LG전자와 같은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들은 특허정보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다. 200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이전에 관련기술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기 출원된 특허가 존재하는 조사) 수행하는 기업은 그림 1과 같이 2007년에 53.8%, 2008년에는 58.8%, 2009년에는 64.6%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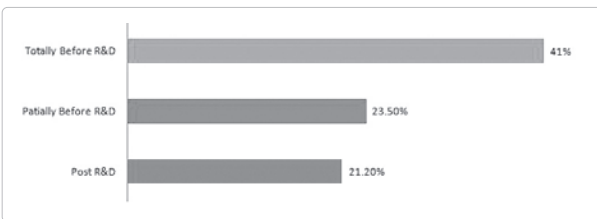
그림 2는 2009년도 기업의 사전 선행기술조사 활용도 수치를 '전체 R&D과제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경우'와 '일부 R&D에서 선행조사를 하는 경우'로 세분해 분석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즉 R&D 과제 전체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체는 41%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행기술이 존재할지 모르는 기술을 중복적으로 개발하고 있을 여지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있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상당 기업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Report

〈그림 1〉 기업선행기술조사 활용도



〈그림 2〉 2009년 선행기술조사 활용도(기업)



## 전략적인 지재권 획득을 위해 기업도 특허정보 활용이 필요

전문가들은 특허분쟁 예방과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특허정보 활용을 주장한다. 즉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공백기술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분쟁요소를 도출해서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 진

행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할 수 있어 시간적, 물질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재권획득할 경우 출원에 대한 비용의 최소화 와 무효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져 양질의 지재권획득이 가능하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 사업을 기획하는 기획자 그리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결정권자는 반드시 연구전략을 기획하기 이전에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단순히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정보획득에 국한되어 일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빈번히 목격한다. 물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전략 수립에 모두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전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불필요한 특허 출원비용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정보수집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실제 비용절감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이 자칫 반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특허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특허정보서비스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선별해야 한다.

## 지재권 확보전략을 위한 기업의 특허분쟁대응 준비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선행적 특허정보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하는가?



① 특허정보를 활용해 특허분쟁의 리스크를 분석하자 - 기업이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쟁기업 및 분쟁을 일으킬만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으며 주요 업체에서 출원된 출원현황만을 분석해도 해당기술에 대한 분쟁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경쟁업체가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많이 출원한 상태이고 기업이 특허소송을 제소할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은 분쟁의 요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기술동향을 수행할 경우 노출되지 않는 경쟁기업 파악이나 특허괴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분쟁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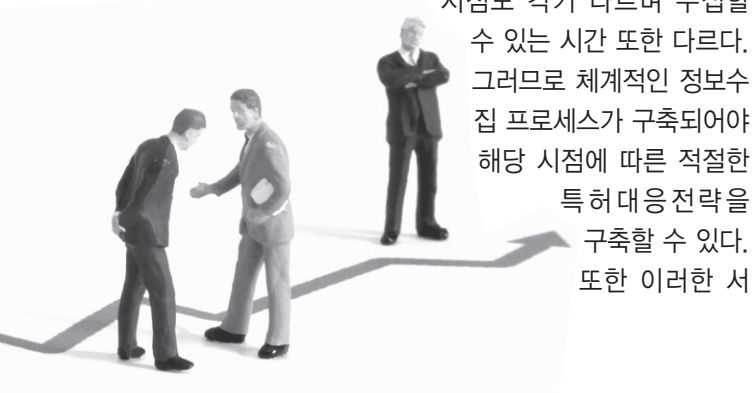
② 기업의 특허출원 시 선별적인 출원을 통해 양질의 지재권을 확보하자 - 특허출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속지주의로 인해 개별국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출원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즉 출원할 기술에 대한 중요도와 선행기술에 대한 분석(특허성조사)을 통해 권리범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서, 출원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등록특허가 되었다할 지라도 무효소송을 통해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허출원은 출원, 등록, 등록유지비용에 대한 비효과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양질의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정보 활용한 특허출원이 중요하다.

③ 종합적인 특허분쟁전략을 구축하자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활용 시점도 각기 다르며 수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정보수집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해당 시점에 따른 적절한 특허대응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

비스는 서로 연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은 가장 효과적인 분쟁예방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④ 분쟁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지재권 확보만을 고집하지 말자 - 특허출원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분쟁대응에 대한 방편으로 국한하여 지재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보유 또한 인력 못지않게 주요한 평가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판단에도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분쟁대응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부가적인 방안으로 특허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분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기술의 발전추이가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특허분쟁을 살펴볼 때 지속적인 분쟁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기업은 기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분쟁에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재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획득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특허정보 활용과 기업의 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2012. 12 |



■ 류 제 택 전문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EU 통합특허법원, 초석을 세우다

## 통합의 기류가 특허에까지

오래 전, 유럽에서는 이슬람과의 마찰이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8세기부터 '유럽통합(European Unification)'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고,<sup>1)</sup> 경제적인 통합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세워 경제 이외의 통합까지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비록 유럽국가들의 단일한 헌법 만들기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EU조약과 EU설립조약의 개정조약이라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을 통해 이제까지보다는 더 강화된 협력을 다지게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통일에 있어서도 협력을 표방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 속에 특허제도에서의 통일화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유럽특허조약(EPC)나 유럽특허청(EPO),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등의 설립이 회원국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특허제도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점, 시간과 비용의 소요, 지식재산권 사법분쟁 발생 시의 각국의 상이한 판단기준 등에서 한계점을 보여왔다.

통합된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특허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게 되었고, 이에 대한 EU 회원국의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 왜 필요한가?

지난 6월 29일, EU 회원국 27개국의 대표기구인 유럽이사회에서는 25개국<sup>2)</sup>이 파리와 뮌헨, 런던 사이에 통합특허법원(UPC) 설립을 포함한 단일한 특허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하였다.<sup>3)</sup> 유럽이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맹약(Compact for Growth and Jobs)”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음을 언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감소와 혁신의 강화를 위해, 그리고 유럽의 고품질 특허 생산을 위해 하나의 특별한 관할권을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히 비용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의 번역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 사용되는 회원국의 언어는 자그마치 23개로, 이 23개 언어의 번역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 점이 통합특허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작용하였다. 2011년 유럽의회에 제출된 통합특허법원 도입안에서는 기존에 EPO에 의해 특허

가 허여된 경우, 각국에서만 유효하여 이를 유럽전역에서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해당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을 요청해야 하는데 13개국만 유효하게 번역하는 경우, 전반적인 비용이 대략 12,500유로에 육박하고, EU회원국 전체에 유효하게 번역하는 경우 32,000유로가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4)</sup> 또한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유럽 내에서 특허보호에 드는 비용이 36,157유로인 경우, 25개국에 통합특허 보호를 위해 드는 비용은 12년 내에는 6,425유로, 그 후에는 4,725유로가 소요된다고 한다.<sup>5)</sup> 즉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용의 불필요한 발생을 막기 위해 통합된 제도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통합법원의 설치에서 더 나아가 특허제도가 전적으로 통합되면, 이는 특허권 허여 후의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특허권을 허여 받은 자가 지정 국가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는 유럽특허 또는 강화된 협력절차에 참여한 국가들의 통합된 영토 내에서 통합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지 선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PO는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기업은 특허소

1) 박덕영 외, EU법 강의, 박영사, 2010, 1면.

2) Belgiu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Estonia, Ireland, Greece, France, Cyprus, Latvia, Lithuania, Luxembourg, Hungary, Malta, the Netherlands, Austria, Poland, Portugal, Romania, Slovenia, Slovakia,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의 25개국. Italy와 Spain이 제외됨.

3)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EUCO76/12,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31388.pdf](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31388.pdf)>.

4) 이인혜, 유럽, 특허분야에서의 통합의 움직임 강화, 세계동향 이슈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4.22. <[http://www.kiip.re.kr/issue/iss00D.asp?tot\\_No=9984&file\\_No=9984&tot\\_Gubn=&tot\\_item\\_gubn=3&MenuStrong=&pagesize=10&pageno=7&s\\_value=&inkeyword=&](http://www.kiip.re.kr/issue/iss00D.asp?tot_No=9984&file_No=9984&tot_Gubn=&tot_item_gubn=3&MenuStrong=&pagesize=10&pageno=7&s_value=&inkeyword=&)>.

5) EU Patent, Patent Court Could Finally Be Approved In Coming Weeks, 2012.11.20 기사(최종방문일 : 2012.11.20)<<http://www.ip-watch.org/2012/11/20/eu-patent-patent-court-could-finally-be-approved-in-coming-weeks/>>.

# Report

송비용의 감축과 법적인 명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되는 통합특허법원은 침해와 복구절차에 있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6)</sup>

## 현황, 어디까지 왔나

지난 6월과 11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이사회에서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실질적으로 특허소송이 고도로 전문화된 특성을 지닌다는 것과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기준이 유지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며,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유럽의회 법무위원회 또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EU는 2014년 초에 이러한 통합특허법원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합의는 경제위기 속에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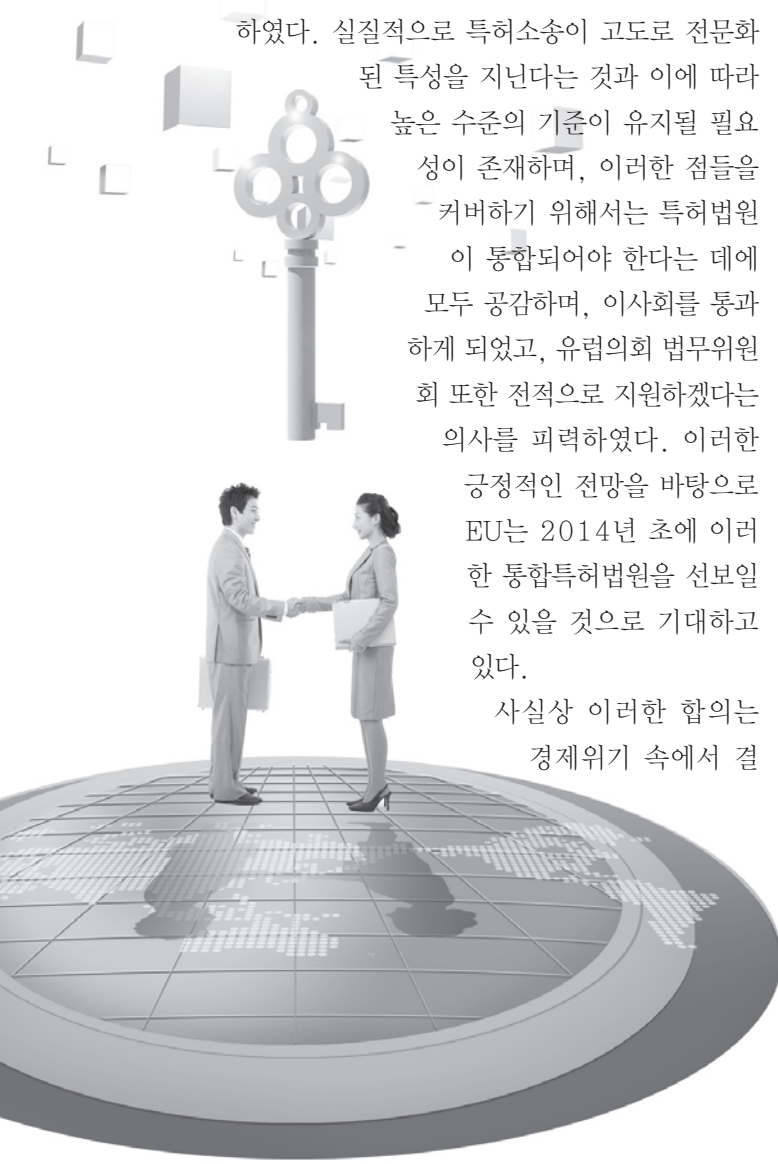
정적인 역할을 하는 EU의 수준에서의 법(또는 조약)의 개시 가능성을 보여주고, EU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동일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덜 비싸고, 더 간편한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유럽 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sup>7)</sup>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통합특허법원은 파리, 런던, 뮌헨의 사이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에 유럽이사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서는 파리에, 중심업무에 따라 런던과 뮌헨에도 부서를 두기로 합의되었다.

## 초안을 둘러싼 갈등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려면,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조직, 기능 등의 규칙을 담은 법의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초안이 제기되었으며, 어느 안을 선택하느냐를 놓고 현재 EU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크게는 초안의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삭제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제기된 규칙초안과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해야한다고 제안한 2012년 6월 유럽이사회 초안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유럽이사회와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는 3개의 주요 조항을 삭제하지는 유럽이사회 움직임은 EU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 3개의 조항이 없다면 특허권의 범 EU 지역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규정한 규칙을 없애자는 것과 같으며, 새로운 협상으로 이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합의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이 된 3개의 주요조항은 초안 제6조, 제7조, 제8조로 제6조에서는 통합특허의 직접침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통합특허의 간접침해, 제8조는 특허와 같은 권리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이 3개의 조항이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는 전체 규칙에 있어 가장 필수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은 대부분이 유럽이사회에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은 3개 조항을 지우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허분쟁을 유럽법원에 회부하는 것조차 절차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8)</sup> 이에 대한 합의가 다가오는 12월에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며, 현재는 유럽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을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어떻게 보면, EU의 현재까지 기능은 ‘특허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절차적인 합의나 큰 틀에 있어서의 협력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PO나 OHIM은 국내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그것 자체로 입법 또는 사법의 기능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특허 사건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또한 통일되지 않은 관할권 제도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국에 제소된 경우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통일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기술적 지식에 해박한 판사들이 다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민사사건과 혼재되어 분쟁 해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별법원의 필요성과 함께 사법권한에 있어서의 강화를 위해 제기된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은 EU 수준에서는 법의 발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간의 한계점을 인식,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특허분쟁이 점차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되어가는 양상이 가열되면서 회원국 각국에서 발생하는 중복제소를 막고, 언어의 번역비용 간소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특허제도의 통합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달 열릴 투표 결과에 따라 초안이 확정되면 더 구체적인 통합특허법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12 |



이인혜 전문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대외정책연구팀

- 6) EPO 홈페이지(최종방문일 : 2012.11.23)(<http://www.epo.org/news/issues/issues/eu-patent.html>).
- 7) CYPRU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11.20. (<http://www.cy2012.eu/index.php/en/news-categories/areas/competitiveness/press-release-unitary-patent-closer-to-the-finishing-line>).
- 8) 유럽의회 홈페이지(최종방문일 : 2012.11.28)(<http://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content/20120709IPR48484/html/EU-unitary-patent-Council-move-would-infringe-EU-law-says-EP-rapporteur>).

# 예술가명칭인 출원상표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단실무<sup>1)</sup>

예술가의 명칭을 타인이 도용하여 상표로 출원시에 거절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상표법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미국 연방상표법상의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표심사기준의 해석상 상표의 실제적인 사용과 관련된 거절이유를 추가적으로 실무상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예술가의 명칭 등을 예술가 자신이 출원하는 경우와 타인이 해당 명칭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절이유 및 판단기준들을 미국 상표심사기준 및 미국 상표심판항고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자.



### 미국 연방상표법상 관련 규정

미국 연방상표법 §2(a)는 출원된 상표가 “비도덕적, 기망적, 수치스러운 것으로 구성된 경우 : 생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 기관, 신념, 국가의 상징을 경멸하거나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불명

예스럽게 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에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규정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immoral or scandalous), 생존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 등

과 관련이 있다고 암시 또는 비방하거나, 이들을 모욕 또는 악평 등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 표장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미국 연방상표법 §2(a)에서는 우리 상표법상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서양속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故人)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해서 생존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기망적인 것을 거절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표법상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미국 연방상표법상 해당 규정에서는 법규정상으 로 특정인의 저명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한편, 동법 동조(c)에서는 “그 생존한 자의 승낙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생존한 자를 표시하는 명칭, 초상 또는 서명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을 포함하는 것 또는 미망인이 살아 있는 미국의 사망한 대통령의 명칭, 서명 또는 초상, 다만 그 미망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존자의 저명성을 요구하는 법규정과는 달리 생존자 명칭의 ‘저명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상표법상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해석상 해당 규정의 특정 생존자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sup>2)</sup> 실질적으로는 특정 생존자가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 연방상표법 §2(a)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판단실무 검토

### (1) 예술가명칭은 출원시 상표로서의 기능인정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미국 상표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등록주의가 아닌 사용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것이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예술가의 명칭에 대해서 본인이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술가 본인이 본인의 이름이나 명칭 등을 실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국상표심사기준상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작품에 사용된 작가의 이름으로 구성된 표장이나 음반속에 있는 노래의 가수 이름으로 구성된 표장은 해당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아닌 작가나 예술가를 식별하는 것으로서만 사용된다면, 상표의 실제적인 상업적인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표법 제1조 및 제 45조(15 U.S.C. §§1051, 1127)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sup>3)</sup>

따라서 작가나 공연자와 같은 예술가의 이름은 저작물이나 음반시리즈에 사용된 경우와, 해당 명칭이 상품시리

1) 이 글은 2012년 8월 25일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앙법학회 및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예술과 법”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한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 및 수정보완한 것이다.  
 2) In re Ross v. Analytical Technology Inc., 51 U.S.P.Q. 2d 1269, 1274 (TTAB 1999). 해당 사건에서는 ROSS를 전기화학분석장비에 대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이름에 ROSS가 포함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 전기화학분석분야에서 잘 알려진 발명가이자 저술가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상표심판항고위원회는 출원상표 ROSS를 상당수의 소비자 등이 이의신청인인 ROSS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국 연방상표법 §2(c)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TMEP(미국상표심사기준) §1202.09(a); In re Polar Music Int'l AB, 714 F.2d 1567, 221 USPQ 315 (Fed. Cir. 1983); In re First Draft, Inc., 76 USPQ2d 1183 (TTAB 2005); In re Peter Spirer, 225 USPQ 693 (TTAB 1985).

## Report

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며 단순히 저작물의 작가나 공연자의 이름을 식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출원에 포함된 경우에 등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상표출원인이 해당 저작물이나 음반 등이 시리즈물임을 보여줄 수 없거나, 시리즈물이지만 예술가명칭이 해당 시리즈의 출처를 식별해 주는 것임을 보여줄 수 없다면, 주등록부상에 등록될 수 없다.<sup>4)</sup>

마찬가지로, 연예서비스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에 관련해서도 단순히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된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예를 들면, 가수 그룹의 명칭인 “GORDON ROSE”는 특정 개인을 식별해 줄 뿐이므로 가수 그룹을 식별해 주는 서비스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sup>6)</sup> 한편, 광고 전단에 사용된 “CORKY THE CLOWN”이란 명칭은 광대의 라이브 공연을 식별해 주는 표장으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는데 이 경우, 해당 표장은 캐릭터를 식별해 줄 뿐 아니라 그 캐릭터가 공연하는 활동이나 연예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sup>7)</sup>

그리고 실시간 연예 서비스업의 경우, 허용되는 견본에는 명칭이 나타난 공연 그룹이나 개인의 사진, 예를 들면, 밴드 드럼에 프린트된 그룹의 명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연예서비스업이든 표장이 나타난 광고물이나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목록이 제출될 수는 있지만, 견본에는 공연자 자체가 아니라 출원서에 기술된 지정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용도로 표장이 사용되었음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sup>8)</sup> 이와 관련하여 음악 그룹의 명칭이 표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음악 그룹의 명칭은 눈에 띄는 그룹의 사진과 함께 그룹의 예약 대행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나타난 광고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 인정근거로 하고 있다.<sup>9)</sup>

한편, 예술가의 명칭 등에 대한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입

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가의 명칭이나 공연자 이름을 등록받고자 하는 출원에서는 해당 명칭 등이 시리즈물로서의 상품출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원인이 해당 예술가의 명칭 등에 관한 표장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작품에 표시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증거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이름이 표시된 여러 가지 책의 커버 및 CD커버의 사본이 포함될 수 있다.<sup>10)</sup>

여기에서 시리즈 작품에 작가명이나 공연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작가나 공연자의 명칭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 즉, 시리즈의 출처를 식별해 주는 것임이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sup>11)</sup> 작가명이나 공연자의 명칭 등이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리즈의 출처 표시로 해당 명칭이 홍보되고 인식됨을 보여주는 증거 또는 작가나 공연자가 시리즈물의 명칭과 품질에 통제권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sup>12)</sup>

우선적으로 작가명이나 공연 예술가의 명칭 등이 저작물 시리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홍보되고 인식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원인은 해당 명칭이 시리즈의 출처로 홍보되고 있는 광고물 사본, 제3자가 해당 명칭을 작품 시리즈를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사본, 또는 해당 명칭이



작품 시리즈와 연관된 것으로 표시되어 사용됨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sup>13)</sup> 예를 들면, 해당 작가 등의 명칭이 많은 다른 책의 커버에 눈에 띄게 표시됨이 나타나 있고, 출원인이 해당 명칭을 시리즈 타이틀로 홍보하고 있

으며, 타인이 해당 명칭을 책 시리즈를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들이 책 시리즈의 출처표시로서 해당 명칭을 인식하고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리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이다.<sup>14)</sup>

다음으로 출원인은 작가나 공연자가 작품의 품질을 통제하고 자신의 이름의 사용을 통제함을 보여주는 서류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작가의 명칭이나 공연 예술가의 명칭이 출처표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증거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타 서류상 혹은 계약상 증거를 포함하는데,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유명한 가수 그룹 ABBA의 이름이 음반의 표장으로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라이선스 계약서에 'ABBA' 표장의 소유자가 상품의 품질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다른 계약상 증거를 통해 소유자가 그룹 이름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sup>16)</sup>

한편, 예외적으로 이상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예술작품 등이 아닌 단품제작에 의한 예술작품 진본에 부착된 예술가의 이름이나 가명은 해당 이름이 시

리즈를 식별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도 주 등록부상에 등록될 수 있으며,<sup>17)</sup> 예술작품 진본에는 그림, 벽화, 조각품, 조각상, 보석 등 예술가가 직접 창조한 작품들이 포함된다.<sup>18)</sup> 따라서, 출판사에 의해 인쇄 등이 이루어지는 소설 등은 예술품 진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sup>19)</sup>

## (2) 생존하고 있는 예술가의 명칭 등을 사용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규정이 존재한다.

연방상표법 §2(c)는 살아있는 특정 개인 또는 미망인이 살아있는 동안 사망한 미국 대통령을 식별하는 명칭, 초상, 서명으로 구성된 표장의 등록을 해당 개인 등의 동의

4) TMEP §1202.09(a).

5) TMEP §1301.02(b).

6) In re Generation Gap Products, Inc., 170 USPQ 423 (TTAB 1971).

7) In re Florida Cypress Gardens Inc., 208 USPQ 288 (TTAB 1980).

8) TMEP §1301.04(d).

9) In re Ames, 160 USPQ 214 (TTAB 1968).

10) TMEP §1202.09(a)(i).

11) In re First Draft, 76 USPQ2d 1183, 1191 (TTAB 2005); In re Chicago Reader Inc., 12 USPQ2d 1079 (TTAB 1989).

12) TMEP §1202.09(a)(iii).

13) In re First Draft, 76 USPQ2d 1183 (TTAB 2005); In re Scholastic Inc., 23 USPQ2d 1774 (TTAB 1992).

14) TMEP §1202.09(a)(ii)(A).

15) TMEP §1202.09(a)(ii)(B).

16) In re Polar Music Int'l AB, 714 F.2d 1567, 221 USPQ 315 (Fed. Cir. 1983), (이와 관련하여 그룹 ABBA와 법인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서류(즉, 계약서)가 있었으며, 해당 법인이 미국 내 음반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17) In re Wood, 217 USPQ 1345, 1350 (TTAB 1983)에서, 예술품 진본에 부착된 YABELLA라는 가명이 표장으로서 기능한다고 인정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을 예술품 진본에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예술품 진본에 부착된 예술가의 이름은 표장으로서 등록될 수 있고, 여기서 출원인의 이름은 기록(예술품 상의 예술가 서명)상 사용 견본으로 증명됐듯이, 표장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본다.

18) TMEP §1202.09(b).

19) In re First Draft, 76 USPQ2d 1183, 1190 (TTAB 2005).

20) In re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v. J.C. Gourmet Food Imports Co., Inc., 703 F.2d 1372, 1376, 217 USPQ 505, 509 (Fed. Cir. 1983), aff'g 213 USPQ 594 (TTAB 1982); In re Canovas v. Venezia 80 S.R.L., 220 USPQ 660, 661 (TTAB 1983).

21) In re McGraw-Edison Co. v. Thomas Edison Life Insurance Co., 160 USPQ 685 (TTAB 1969), vacated on other grounds, 162 USPQ 372 (N.D. Ill. 1969); In re Masucci, 179 USPQ 829 (TTAB 1973).

# Report

를 받지 않는 한, 허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 서명, 초상의 등록에 대해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을 식별하는 명칭에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본다.<sup>20)</sup> 해당 규정은 미망인이 살아있는 동안 고인(故人)이 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개인을 식별하는 대상으로 구성된 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1)</sup>

등록에 대한 특정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일반 대중이 해당 표장을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으로서 인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에는 연관이 있어야 하며, 동의는 개인이 상품 및 서비스업에 연관될 경우에만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이 공개적으로 해당 표장이 사용된 사업에 관계하고 있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대중이 합리적으로 해당 연관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22)</sup>

이 때에 출원된 상표의 특정 상품류에 대해 §2(c)에 따른 거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 공개적으로 해당 상품류에 기재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업에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상품류의 일부 상품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sup>23)</sup>

이러한 면에서 생존한 예술가의 명칭 등이 지정상품 등과 관련이 없어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단기준과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미국은 타인이 예술가의 명칭 등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해당 예술가의 명칭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정 예술가의 명칭 등의 상품 등과 관련된 인식요건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적용기준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 등에 관한 표장은 예술가의 전체 성명일 필

요는 없고, 이름, 성, 가명, 무대명, 타이틀 또는 별명에도 적용되며, 해당 이름이 관련 분야 및 상품 및 서비스업과 연관되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특정한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sup>24)</sup> 그러나, 제2조(c)항은 특정한 개인이 성(姓)만으로서 알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 예술가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연예인의 지위에 준하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사건으로서 유명한 미국프로축구스타이자 프로야구스타인 “보 잭슨(Bo Jackson)”의 잘 알려진 별명인 “BO”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스포츠 공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유명스포츠스타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출원인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게 해준다는 판례가 있기도 하다.<sup>26)</sup>

한편, 한 명 이상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인데, 해당 이름에 관한 상표가 관련 대중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업과 연관되어 잘 알려진 특정한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출원상표에 나타난 이름이 한 명 이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잘 알려진 개인에 의한 동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sup>27)</sup> 즉,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과 동일한 자신의 성명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할 때라도, 해당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명칭에 대하여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 (3) 사망한 예술가의 명칭을 사용한 상표의 등록 거절에 관한 규정도 존재한다.

예술가의 명칭을 무단으로 상표로 출원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연방상표법 §2(a)가 적용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또한 그러한 사람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멸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경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출처표시로서의 사용 및 인식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예술가의 명칭과 관련된 프

라이버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상표들의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의 명칭 등을 도용한 상표에 대해서도 해당 예술가 등과의 관계허위표시나 해당 예술가 등을 경멸 또는 불명예스럽게 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제6호의 일부 내용을 포함시킨 것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 정리하며

미국 연방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을 타인이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뿐만 아니라, 예술가 본인이 자신의 명칭에 대하여 직접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의 판단기준을 통해 상표등록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용자 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 연방상표법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단품 예술품에 대해서만 출처표시로서의 식별기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림, 조각 등과 같이 화가가 직접 그린 단품 예술품과, 소설이나 서적류처럼 작가가 직접 창작은 했으나 상품의 제공형태가 출판사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예술품을 별도로 나누어 출처표시의 입증여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예술가의 명칭을 타인이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연방상표법 §2(a)와 §2(c)에 의해서 그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생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예술가가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2(c)와, 생존자 및 사망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해당 생존자 및 사망자를 경멸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2(a)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상표법상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예술가의 명칭 등과 관련된 출원상표에 대해서

는 연방상표법 §1, §2(a) 및 §2(c), §45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중 특히 예술가의 명칭 등을 타인이 도용한 상표에 대해서는 해당 예술가가 생존자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2(a)와 §2(c)가 중복되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2. 12 |



정 태 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 22) TMEP §1206.
- 23) TMEP §1206.02.
- 24) TMEP §1206.01.
- 25) Société Civile Des Domaines Dourthe Frères v. S.A. Consortium Vicole De Bordeaux Et De La Gironde, 6 USPQ2d 1205, 1209 (TTAB 1988).
- 26) In re Sauer, 27 USPQ2d 1073 (TTAB 1993), aff'd per curiam, 26 F.3d 140 (Fed. Cir. 1994).
- 27) See Steak and Ale Restaurants, 185 USPQ at 447(영국 왕실의 일원인 찰스 왕세자의 동기가 없이는 고기 상품에 "PRINCE CHARLES"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는데, 한 명 이상의 살아있는 'Prince Charles' 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인정되지만, 그래도 찰스 왕세자의 동기가 있어야 이와 같은 동명이인들의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최근 미국(2009년)과 일본(2012년)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법한정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12. 1. 27.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청구항 해석론

### 개요

2012년 나트륨 판결은 특허침해소송 사건이기는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시의 PbP 청구항 해석론과 함께 특허성 판단시의 해석론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나트륨 판결에서 제시된 해석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권리범위 판단시와 특허성 판단시의 PbP 청구항에 관한 해석을 일치시켰다는 점과, PbP 청구항을 ‘진정(眞正) PbP 청구항’과 ‘부진정(不眞正) PbP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고 실시한 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권리범위 판단시와 특허성 판단시 모두 원칙으로서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에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제법한정설’을 채용했고, 다만, 물건의 구조 또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진정 PbP 청구항’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 일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2012년 나트륨 판결의 주요 내용<sup>18)</sup>

2012년 나트륨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권리범위)의 확정을 위해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실시했다. 즉, “특허법 70조 제1항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정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문언(文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 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령 이것을 부정하여, 특허청구범위로서 기재되어있는 특정 「문언」이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특허공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행동한 제3자의 신뢰를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害)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제3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청구항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당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당해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당해 제조방법을 넘어서 타 제조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확정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라고 제법 한정설을 원칙론으로 채용하면서, “본건과 같은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는 물건의 구조 또는 특성으로 기재되고 특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건의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허법 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는 것도 허용되고, 특허법 36조 6항 2호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특정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은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 물건에도 미친다고 해석된다.”라고 실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제법 한정설’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물건 동일성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원 시에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구조 또는 특성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여 제조방법에 의해 이것을 행하는 청구항을 ‘진정 PbP 청구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진정 PbP 청구항’이라고 정의한 다음 “진정 PbP 청구항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으로 해석되는 됴에 반해, 부진정 PbP 청구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건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 PbP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진정 PbP 청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출원시에 그 물건

18) 中山信弘 등, 특허판례백선(제4판), 有斐閣, 130~131면, 일본 지재 프 리즘 Vol. 10, No. 117, “청구항 해석론의 재구성” P27~43, 참조.

19) 일본에서는 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권리 범위 확정을 위한 청구항 해석에는 ‘기술적 범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특허성 판단을 위한 청구항 해석에는 ‘발명의 요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Report

을 직접적으로 구조 또는 특성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의 입증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입증할 수 없을 때는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된 대로 해석·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무효심판 절차 등에서의 발명의 요지 인정과 관련해서,<sup>19)</sup> 특허권 침해소송에 관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권리범위)의 인정 방법과 같은 이유로, 원칙적으로 제법 한정설이 타당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물건 동일성설’을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012년 나트륨 판결은 일본에서의 기존 PbP 청구항 해석론과 다소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청구항의 공시가능 및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PbP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정 PbP 청구항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항에 기재된 제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권리범위 판단시와 특허성 판단시의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권리범위)를 확정할 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기준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PbP 청구항의 경우 청구범위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제법을 고려하지 않는 물건 동일성설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나트륨 판결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PbP 청구항의 해석론에 반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트륨 판결에서 제시한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해석론은 앞서 살핀 동경지방법판소 2002. 1. 28. 판결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트륨 판결에서의 PbP 청구항 해석론에 대한 검토

일본에서는 2012년 나트륨 판결을 통해 PbP 청구항의 해석론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침해사건에서 권리범위 판단시는 종래에도 제법 한정설에 근거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완전히 그 해석론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허성 판단시에서의 PbP 청구항의 해석론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2012년 나트륨 판결 이전에는 물건 동일성설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법 한정설을 적용하였는데, 2012년 나트륨 판결은 제법 한정설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물건 동일성설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시 물건 동일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일본에서도 그동안 특허청 실무나 법원에서 일관되게 물건 동일성설을 취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제법 한정설을 채택한 나트륨 판결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트륨 판결은 부진정 PbP 청구항의 경우 특허성 판단시에도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법 한정설’에 관해서 살핀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물건의 발명’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그 물건의 물리적인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의 특허성 여부에 따라 그 발명의 특허성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나트륨 판결에 따르면, 종래와 동일한 물건을 종래에 비해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조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도 그 물건 자체는 종래 물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특허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을 구분해서 각각의 경우에 청구항 해석을 달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진정 PbP 청구항은 ‘출원시에 그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여 제조방법에 의해 이것을 행하는 청구항’을 말하는데, 여기서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그 구조나 성질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것이며, 또한, 심사관이나 심판관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0)</sup> 결국, 이러한 접근법은 '물건을 구조 또는 특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PbP 청구항 해석론에 대한 논쟁도 일본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 우리나라의 PbP 청구항 해석론 및 일본·미국의 최근 판결과 비교

### 우리나라의 PbP 청구항 해석론

우리나라는 PbP 청구항 해석 관련해서 하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이 판례는 2006년 판결로서 특허성 판단시에서의 PbP 청구항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특허청의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이 판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 사건에서 PbP 청구항 해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 않고, 특허법원에서만 관련된 판결을 찾아볼 수 있다.

### 특허성 판단시 PbP 청구항 해석론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지침서는,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는 방법이나 장치가 아니라 물건 자체로 해석되므로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 대상은 물건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등에 있어 그 방법이나 장치가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자체’의 구성이 공지된 물건의 구성과 비교하여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방법적 기재에 의해 물성·특성·구조 등을 포함하여 특정되는 물건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특허무효사건)은,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상고기각),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상고기각) 등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

20)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정 PbP 청구항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만, 특허성 판단시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Report

할 필요가 없다고 실시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례는 ‘특별한 사정’과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먼저,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서는, 위 판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해설<sup>21)</sup>을 참작해 보면,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에서 얻어진 물건을 그 구조나 성질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구성의 변화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통상적인 경우에는 제조방법에 따른 구성의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방법에 따른 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다음으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조방법에 의해 구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그 제조방법 자체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에 반해, 제조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방법 그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 판례에 대한 판례해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란 물건을 그 구조나 성질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특허성 판단대상으로 삼지 않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에 특허성이 있는 경우 그 발명도 특허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외국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법리나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

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특허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위 판례에 따라 PbP 청구항의 특허성을 판단할 경우, 우선, 제조방법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제조방법은 고려하지 않고서 그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특허법원 2009. 12. 9. 선고 2008허12524 판결,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7허2797 판결(상고기각 되어 확정), 파기환송심인 특허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허2661 판결(확정) 등에서도 모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은 채 물건 동일성설에 입각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나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본 바와 같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의 해석에 관한 엇갈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

##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 판단시 PbP 청구항 해석론

권리범위 판단시 PbP 청구항의 해석론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다만, 특허법원에서만 관련 판례가 나왔는데, 특허법원은 제조방법을 그 발명의 구성에 포함시켜 권리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947 판결(확정)(권리범위확인사건)은 “물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범위에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물건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 명확히 기재되어 등록된 경우 그 효력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 그 한정된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그 특정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는 물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580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가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항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특허법원 판결들은 모두 PbP 청구항의 특허침해 여부 판단시 제조방법을 물건의 구성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청구항 해석론(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 이후)과의 비교

현재의 우리나라의 PbP 청구항 해석론은 특허성 판단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동일성설을,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특허법원에서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해석론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해석론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특허성 판단시에는 물건 동일성설을,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허성 판단시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암시하고 있고<sup>23)</sup>, 실제 실무에서도 제법한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지만,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

에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침해 사건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미국의 해석론과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의 해석론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시사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2009년 Abbott Laboratories v. San

doz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특허가 청구되는 시점에 명확한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법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향후 우리나라가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건이 신규하지 않은 경우와 물건이 신규한 경우 침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참고할 만한 것 같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향후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청구항 해석론에 관한 차이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PbP 청구항



21) 대법원 판례해설 62호(2006. 12.) 박정희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조방법을 당해 특허발명의 구성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22) 김관식,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제조방법에 의한 물건 형식 청구항의 해석’ 94~96면  
 23) 통상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 모두 물건 동일성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Report

에서 청구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약간만 다르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제품을 선행기술이 개시하고 있는 때에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으로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 일본에서의 청구항 해석론 (2012년 나트륨 판결)과의 비교

2012년 나트륨 판결을 통해 일본은 PbP 청구항 해석론이 크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특허성 판단시 PbP 청구항 해석론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물건 동일성설이고, 예외적인 경우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원칙적으로 제법 한정설이고, 예외적인 경우(진정 PbP)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원칙적으로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본은 진정 PbP의 경우 물건 동일성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최근 나트륨 판결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석론과 상당히 다른 입장을 채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다.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일본은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해석론은 일본의 종래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두 경우에 있어서 해석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PbP 청구항에 대한 이원적인 해석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허성 판단시 원칙적으로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채용한 점도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종래 일본의 판례에서뿐만 아니라, 미

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성 판단시 '제법 한정설'을 원칙적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2012년 나트륨 판결은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판결 내용도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권리범위 해석론을 위주로 다루면서, 방론으로서, 특허성 판단시에도 권리범위 판단시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실시한 것이어서, 과연 특허성 판단시 '제법 한정설'을 채용한 것이 일본 내부에서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PbP 청구항을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하고서, 진정 PbP 청구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건 동일성설'을 채택한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도 결국은 '진정 PbP 청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bP 청구항을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그 해석론을 달리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진정 PbP 청구항에 대해서는 '제법 한정설'을, 부진정 PbP 청구항에 대해서는 '물건 동일성설'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그 정 반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개인적인 견해로서, 굳이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결국 무엇이 진정 PbP 청구항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되고, PbP 청구항 해석론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bP 청구항 해석론 정립을 위한 몇 가지 검토 과제들

미국과 일본의 최근 판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시사점들을 토대



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는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을 일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능식 청구항과 마찬가지로 이원적인 해석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일본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근 판례로서 제시했고,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에는 '최광의 해석원칙'에 따라 넓게 해석하고,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이원론적인 해석론을 채용하고 있는 등 일본과 미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지 PbP 청구항에만 국한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구항 해석론의 관점에서 이원적인 해석론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허법은 「발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파악된 발명이 특허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기술적 범위」에 관해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권의 외연은 특허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발명의 외연과 일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발명의 요지」와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sup>24)</sup>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PbP 청구항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일본의 최근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PbP 청구항을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

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특허성 판단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PbP 청구항을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어떠한 발명이 진정 PbP 청구항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PbP 청구항을 이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진정 PbP 청구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면 그 제조방법에 의해 얻어진 물건이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나 특성을 갖는지, 아니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sup>25)26)</sup>, 진정 PbP 청구항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해서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을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그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sup>27)</sup>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방법이 다른 경우 그 방법의 의해 제조된 물건들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유추 해석함으로써 그 진보성을 인정하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이와 관련해서는 PbP 청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을 예외적인 경우로 구분하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

24) 일본 지재 프리즘 Vol. 10, No. 117, "청구항 해석론의 재구성" P27~43.  
 25)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해 화합물이나 단백질과 같은 신규 물질을 발견한 경우, 그 물질의 구조 및 특성은 직접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 물질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는 실시에 등을 통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범위에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질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제조된 물질은 명세서로부터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26) 기능식 청구항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능식 청구항도 그 구조나 특성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능적으로만 특정한 것이고, 이러한 청구항의 해석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한정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그러한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시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 Report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심사지침서인 MPEP에 따르면<sup>29)</sup>, PbP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이 종래 물건으로부터 예측 가능하거나, 자명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물건을 발견해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해당 PbP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종래 물건이 상이하다는 것은 출원인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PbP 청구항을 진정과 부진정으로 구분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굳이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다소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서 PbP 청구항을 진정과 부진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현재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범주의 구분, 즉,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구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물건의 발명임에도 제조방법의 특허성 여부에 따라 그 물건의 특허성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제법 한정설’은 그 발명이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그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제법 한정설에 따라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경우, PbP 청구항으로 기재된 ‘물건의 발명’과 제조방법만을 청구한 ‘방법의 발명’의 실시행위는 그대로 일치해 버리기 때문에<sup>30)</sup> 결국, 동일한 권리범위를 갖는 중복 특허가 허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제법 한정설을 따를 경우 제조방법에 특허성이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도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정을 개선해서 제조 효율성만을 향상시킨 것이라면, 공지된 물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단지 그 물건이 쉽고

효율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부여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의 범주의 구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립된 청구항 해석론, 즉,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출원 경과 등을 참작함으로써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물건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bP 청구항은 제조방법에 의해 그 물건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 물건의 물리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발명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도록 이미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PbP 청구항의 발명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다면 굳이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서 권리범위를 판단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특허성 판단시 물건 동일성설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최종 제조물의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물건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접근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위 네 가지 검토과제들을 토대로 볼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완전한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한 일원론적인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PbP 청구항에 대해서 진정 PbP 청구항과 부진정 PbP 청구항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모두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한, 필자가 제시한 해석론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

## 결론

지금까지 PbP 청구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해석론과 최근의 판례를 통해 PbP 청구항의 해석론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와 미국, 일본의 해석론이 어떤 점에서 공통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도 살펴보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PbP 청구항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위 판결들을 통해 종전의 서로 엇갈린 견해를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론을 어느 정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해석론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고, 또한,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견해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 판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해석론은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지만, 학계에서 판례 해석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등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또한, 침해사건에서의 PbP 청구항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PbP 청구항에 관한 해석론이 판례로서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PbP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PbP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이에 관한 판결도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PbP 청구항에 관한 해석론이 판례로서 완전하게 정립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즉, 이원적인 청구항 해석론이 타당한지, PbP 청구항을 진정과 부진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발명의 범주 개념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지, PbP 청구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서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많은 검토과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PbP 청구항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명쾌한 해석론이 조만간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향후 명쾌한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2012. 12 |



김 병 필  
대법원 민사과 서기관

- 28)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방법이 다를 경우 제조된 최종 물건도 다르다는 논리를 통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9) 미국 심사지침서(MPEP) 2113, 'Product-by-Process Claims'
- 30) 물건발명의 실시행위인 '물건의 생산'은 '제조방법 A에 의해 생산한 물건 X를 생산하는 것', 즉 '제조방법 A에 의해 물건 X를 생산하는 것'이 되는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행위인 '그 방법의 사용'도 '제조방법 A에 의해 물건 X를 생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실시행위는 동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실시행위인 '물건의 사용'과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의 사용'을 검토하면, 물건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모두 '제조방법 A에 의해 (실제로) 생산한 물건 X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그 실시행위는 동일하게 된다. 결국, PbP 청구항을 제법 한정설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물건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에서의 실시행위는 차이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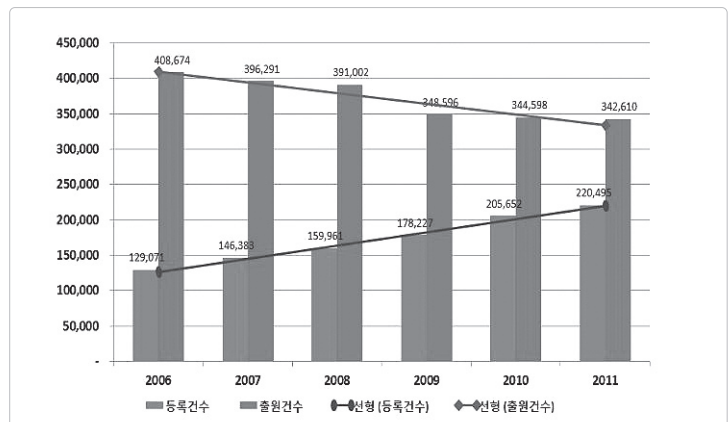
# 최근 일본에 있어서 특허의 진보성 판례 경향

일본의 특허 등록결정률 6년동안 12% 증가



(일본) 특허 등록결정 건수 및 출원 건수의 추이 비교

(단위 : 건)



**현** 재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매년 감소하여 최근 6년 사이에 6만건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특허 등록결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9만건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 특허 등록결정률이 6년 연속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48.5%였던 등록결정률이 2011년에는 60.5%로 5년동안 무려 12% 증가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등록결정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사관들의 등록결정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이이무라 토시아키(飯村敏明) 판사의 최근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실용신안 심결취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발명의 진보성 유무다. 심결에 있어서 진보성 유무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제로 판단된다. 즉 ① 이견발명의 인정 ② 이견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주인용발명)의 인정 ③ 이견발명과 주용발명의 상이점 추출 ④ 이견발명의 상이점 구성이 주용발명과 타 기술(부인용발명)을 조합하는 것에 의하여 도달하는 것이 용이한가 여부의 판단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결에 의해 약 30% 정도가 취소되는 이유는 상기 ① 내지 ④의 인정, 판단 과정 중 어느 것인가의 잘못이 있어, 심결의 논리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이무라 판사가 작성한 “지적재산소송의 현황과 과제(2010년 8월)”라는 기사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최근의 심결취소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심결에서 인용발명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은 평성21(행케)제10112호 수지적층체 등 5건이 있다.
- (2) 심결의 인용발명과 이견발명의 일치점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성21(행케)제10125호 작업용 암레스트 1건이 있으며,

- (3) 상이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성21년(행케)제10136호, 적재설비 1건이 있다.

또한, 심결의 용이상도성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성20년(행케)10096호 외 3건이 있다. 이러한 판결은 당해발명이 용이상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용발명과 부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당해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사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 (4) 심결의 인용예 등의 조합에 대한 시사적 결여를 언급하고, 용이상도성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성21(해케)10144호 등 2건이 있고,

- (5) 저해요인의 간과를 언급하며 용이상도성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것으로, 평성20년(행케)제10431호 1건 있다.

본 소고에서는 이견발명의 구성요소(A+B)는 주용발명에 A가 개시되어 있고, 부인용발명에 B가 개시되어 있어서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되었다. 심결에서도 거절결정이 지지되었으나, 주용발명 A에 부인용발명 B를 조합하여 이견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사나 동기부여』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레이더(radar)”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 레이더(radar) 판결

판례

평성20년(행케) 제10130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8년12월25일  
출원번호 출원평8-322402 (발명의 명칭 : 레이더)

쟁점 : 주용발명 A에 부인용발명 B를 조합하여 이

# Report

건발명의 특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사나 동기부여』의 존재여부

## 판결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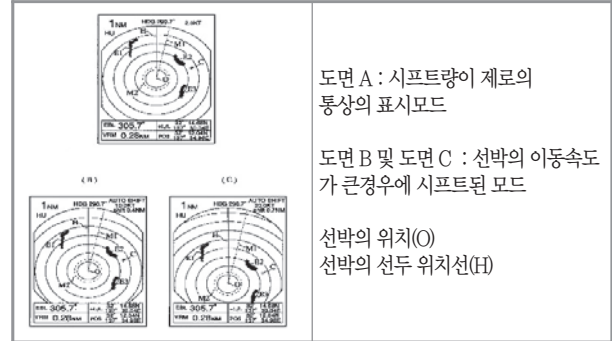
주인용 발명에 있어서는 타항공기 등은 이미 전체의 표시 화면에 있어서, 자항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전부터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 구역」화면의 표시 형태로서 오프 센터 기능을 적용하는 해결과제 내지 동기부여는 없다.

심리판결은 이견발명과 주인용발명은 해결 과제 및 기술 사상은 서로 달리하고 있고, 주인용 발명을 전제로 하는 한은 이견발명과 공통되는 해결과제는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과제를 상정한 다음 그 해결수단에 주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더라도 판단하고 인용 발명으로부터 이견발명의 용이 상도성을 이끈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이견발명 기술적 요지

안테나(antenna)의 방향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펄스 전파의 송수신을 실시하고, 안테나 주위의 탐지 화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며, 소정의 범위의 탐지 화상을 표시 화면(display screen)내에 표시하는 이동체에 장비되는 레이더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의 이동 속도(passing speed)를 검지하는 이동체 속도 검지 수단을 구비하고, 표시 화면(display screen)내에서 이동체의 표시 위치를 상기 표시 화면내의 기준 위치로부터 이동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후방으로 정해진 시프트량만 시프트시켜 상기 탐지 화상을 표시하고, 상기 이동체 속도 검지 수단에 따라 검지된 이동체의 이동 속도(passing speed)가 크게되면 될수록 상기 시프트량을 크게 하는 탐지 화상표시 제어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더.

### [이견발명의 도면]



## 인용발명의 기술적 요지

### [주인용발명]

일본공개특허 소61-79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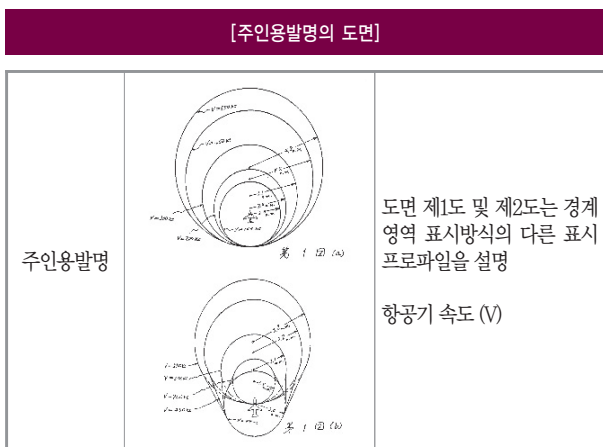
자항공기의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 장치가 발하는 질문 신호에 응답하는 타항공기의 ATC트랜스포트 응답 신호(answering signal)를 수신하고, 그 수신 전기장 강도(electric field strength), 방위 등에서 타항공기의 개략 위치를 파악하며 이것을 CRT상의 경계 구역내에 표시하는 항공기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장치에 있어서, 대기속도계(air speed indicator)가 지시하는 자항공기 속도 정보를 계산기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하여 자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정 반경의 원과, 상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상기 자항공기의 속도에 따라 그 진행 방향으로 직경이 신축하는 원과의 외주를 결합하는 프로파일(profile)을 가지는 경계 구역을 CRT상에 표시하여, 자항공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직경을 신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장치.

### [부인용발명]

일본공개특허 소54-64991

일본공개특허 소59-17177

이동체의 표시 위치를 표시 화면(display screen)의 중심 위치(center location)로부터 후방으로 이동시켜 표시하는 기술이 기재되어, 동기술은 표시 화면(display screen)상에 표시되는 탐지 화상의 표시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탐지 화상의 묘화 중심 위치(center location)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이 출원분야의 주지 기술인 것이 인정된다. (이하 “오프 센터” 기능이라 한다.)



### 이건발명과 주인용발명간의 동일점과 차이점

#### (1) 동일점

전파의 송수신을 실시하여, 주위의 탐지 화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정 범위의 탐지화상을 표시 화면(display screen)내에 표시하는 이동체에 장비되는 전파를 이용한 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의 이동 속도(passing speed)를 검지하는 이동체 속도 검지 수단을 구비하고, 표시 화면(display screen)내에서 이동체의 표시 위치보다 이동체의 이동 방향에서 보아 전방의 탐지 화상의 표시 범위를 이동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넓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파를 이용한 항법 장치.

#### (2) 차이점

#### [차이점 1]

전파를 이용한 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가, 이견 발명에서는 안테나(radio antenna)의 지시방향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펄스 전파의 송수신을 실시하고, 안테나 주위의 탐지 화상을 표시하는 레이더인데 비해, 인용 발명에서는 ATC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점.

#### [차이점 2]

탐지 화상의 표시의 변경에 관해서, 이견발명이 표시화면(display screen)내에서 이동체의 표시 위치를 상기 표시 화면내의 기준 위치로부터 이동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후방으로 정해진 시프트량만 시프트시켜 상기 탐지 화상을 표시하고, 상기 이동체 속도검지 수단에 따라 검지된 이동체의 이동 속도(passing speed)가 커지는 만큼, 상기 시프트량을 크게 하는 탐지 화상표시 제어수단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인용 발명은 이와 같은 구성을 구비하지 않는 점.

### 판례의 개요

(사건의 경위)2005년11월28일 거절결정

2008년2월25일 심결(진보성 없음)

2008년12월25일 판결(진보성 있음)(심판소 판단)

(1) 차이점1 관련 : 주인용발명에 주지의 레이더를 적용해 이견발명의 차이점 1의 구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지의 레이더와 인용발명의 ATC 트랜스폰더를 이용한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 시스템이란, 전파를 이용한 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한편, 전파를 송수신 하는 것에 의해 목표의 위치 정보를 얻어 탐지화상으로서 표시 화면(display screen)상에 표시

# Report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술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진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이동체의 이동 속도(passing speed)에 따라 표시 화면내에서 이동체의 위치를 기준 위치보다 이동체의 이동 방향 대하여 후방으로 시프트시키는 것으로, 표시되는 전방의 감시 범위를 넓힌다는 감시를 위한 표시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탐지 화상의 표시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탐지 화상의 표시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확실히 주지의 레이더와 ATC 트랜스폰더의 표시 결과에는, ATC 트랜스폰더에 있어서는 목표의 형상을 모르는 것,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타항공기나 고정물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것 등 상위가 있으나, 그러한 상위는 인용 발명의 ATC 트랜스폰더 이용을 대신해 주지의 레이더를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발명과 공통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한편, 기술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주지의 레이더」를 인용발명에 적용하여 차이점 1과 관련된 구성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 1에 대한 용이성 판단에 잘못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이유가 없다.

(2) 차이점 2 관련 : 주이용발명의 충돌 방지(collision avoidance) 장치와 주지의 오프 센터 기능이라는 것은 항법장치라고 하는 공통의 기술 분야에 속하고, 「전방의 감시 구역의 표시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는 점으로 공통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한편, 주이용발명에 있어서 경계 구역의 원의 표시 범위는 자항공기의 속도가 증대하는 것에 따라서 전방이 넓어지는 것으로부터, 표시장치인 CRT

표시 영역으로부터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주이용발명에 주지의 오프 센터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이용발명에 주지의 오프 센터 기능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이진발명의 상위점 2의 구성으로 하는 것은 당업자라면 용이한 것이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단)

(1) 주이용발명에서는 표시기 DISPLAY상에 타항공기의 개략 위치를 나타내는 전체의 표시 화면(display screen)은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일 없이, 일정한 범위의 화상을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체 표시 화면중 충돌의 우려가 적은 타항공기도 표시되는 것에 의해 조종자의 주의가 산만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위협기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시켜 항공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과제가 존재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기 자항공기의 속도에 따라 그 진행 방향으로 직경이 신축하는 원으로 나타나는 「경계 구역」을 CRT위에 겹쳐 표시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특개소 59-17177호 공보 및 특개소 54-64991호 공보에 의하면, 이동체의 표시 위치를 표시 화면의 중심 위치(center location)로부터 후방 등으로 이동시켜 표시하는 기술이 기재돼 동기술은 표시 화면상에 표시되는 탐지 화상의 표시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탐지 화상의 묘화 중심 위치(center location)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주지 기술인 것이 인정된다.

상기대로, 오프 센터 기능은 탐지 화상의 묘화 중심 위치를 후방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방의 표시 화면 한계 위치까지의 표시 범위를 넓히고, 변화시키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탐지 목표물이 보이도록 하는 한편, 후방의 표시 화면 한계 위치까지의 표시 범위를 좁혀, 변화시키기 전에는 보였던 탐지 목표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기술이다.

**(2) 그러면 주인공발명에 있어서, 주지 기술인 오프 센터 기능을 채용하는 해결 과제 내지 동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

위와 같이, 주인공발명은 표시기 DISPLAY상의 전체의 표시 화면에 대해서, 자항공기의 속도 등에 의해서, 전방의 표시 범위를 신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정한 범위내에 위치하는 타항공기 등 모든 것을 표시시키는 것을 전제 내지 상정한 발명이다. 이와 같이 주인공발명은 전체의 표시화면내에 여러 가지 표시되는 타항공기 등에서, 조종자로 하여금 실제로 충돌을 경계해야 할 타 항공기를 식별시켜 그러한 항공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경계 구역」을 원으로 표시하는 한편, 자항공기의 속도에 따라 그 반경의 길이를 신축시키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다. 상기와 같이 「경계 구역」의 표시 화면은 전체의 표시 화면에 이미 표시되고 있는 것의 타항공기 등 중에서, 충돌을 회피시킬 필요가 없는 항공기 등과, 실로 충돌을 회피시킬 필요가 있는 타항공기 등을, 조종자에게 식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유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주인공발명에서는 표시기 DISPLAY상의 전체의 표시 화면에는 충돌우려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항공기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서 이미, 전체의 표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타항공기 중에서, 조종자에게 실로 충돌을 경계해야 할 타항공기를 조종자에 식별시키고, 주의를 하기 쉽게 하는 목적으로, 「경계 구역」을 표시시킨다고 하는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주인용 발명이, 과제를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는 발명인 이상, 「경계 구역」의 표시 범위만을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프 센터 기능을 채용하는 해결 과제, 우위성 내지 동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 가령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공발명이 상정하는 과제해결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제 설정과 해결수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주인공 발명에 있어서는 타항공기 등은 이미 전체의 표시 화면에 있어서, 자항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전부터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 구역」화면의 표시 형태로서 오프 센터 기능을 적용하는 해결과제 내지 동기 부여는 없다.**



# Report

심리판결은 이진발명과 주이용발명은 해결 과제 및 기술 사상은 서로 달리하고 있고, 주이용 발명을 전제로 하는 한은 이진발명과 공통되는 해결과제는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과제를 상정한 다음, 그 해결수단에 주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판단하고, 인용 발명으로부터 이진발명의 용이 상도성을 이끈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판례의 고찰

이진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구성요소는 주이용발명에 구성요소 A와 주지기술에 구성요소 B가 개시되어 있으나, 주이용발명에 있어서 주지 기술인 오프 센터 기능을 채용하는 해결 과제 내지 동기부여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주이용발명의 구성요소 A와 주지기술에 구성요소 B를 결합하여 이진발명(C=A+B)의 발명 C의 안출이 곤란하므로 이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판례이다.

그러나, 상기 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지의 레이다와 주이용발명의 ATC 트랜스폰터를 이용한 충돌방지(collision avoidance) 시스템이란, 전파를 이용한 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라고 하는 공통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한편, 전파를 송수신 하는 것에 의해 목표의 위치 정보를 얻어 탐지화상으로서 표시 화면(display screen)상에 표시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술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이용발명에 있어서 주지 기술인 오프 센터 기능을 채용하려는 해결 과제 내지 동기부여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고 진보성을 인정한 것은 진보성의 척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당업자라면 자신의 발명을 진보시키기 위해 주위에 공개된 기술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이진발명과 같이 동

일 내지 유사기술 범주의 주지기술을 주이용발명에 적용시켜 결합시키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창작범위에 속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012. 12 |



황 동 율 책임심사관  
특허청 공조기계심사과

# 발명특허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발명만화 \_ 몰래발명이야기 - 자동문

건강하게 삽시다 \_ 겨울, 면역력을 키워라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세계는 지금

## 영국 지식재산청, 영국 대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 10월 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전국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 NUS), 영국 지식재산 인식 네트워크(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Network, IPAN)와 공동으로 영국 대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장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더 나은 지식재산 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며, 약 40%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현재 자신의 이해 수준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80%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식재산 교육의 잠재적 영향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2%의 학생은 모두가 그들 작품이나 사고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극히 일부 학생만이 지식재산과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전국학생연합의 Rachel Wenstone 부청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교과과정에 통합되어 장래경력에 연계되기를 학생들이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고, 영국 대학과학부의 David Willetts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잘 아는 노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 및 산업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현재의 교과과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지식재산 인식 네트워크의 Ruth Soetndrop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등교육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ipo.gov.uk>



##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특허정보기구, 중국어 특허문서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지난 11월 5일,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는 일본 특허정보기구(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JAPIO)와 공동으로 중국어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자동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에 일본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침해 및 관련 소송이 증가했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중국어 특허문헌 검색 및 내용 파악을 위한 번역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정보통신연구기구의 최첨단 자동번역기술과 일본 특허정보기구의 뛰어난 특허데이터 처리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해 특허문서의 중·일 자동번역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중·일 자동번역 소프트웨어의 번역 수준은 기존 번역 기술의 3배 이상의 정확성을 높였다.

정보통신연구기구는 이번에 개발한 중·일 자동번역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중국의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를 DB화하여 내년 봄에 「JAPIO 세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JAPIO-GPQ)」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nict.go.jp>

## 미국 'Patently-O', 특허 전문 변호사 현황 분석

지난 11월 13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70,549번째 특허 전문 변호사(practitioner)의 등록을 공고한 것을 계기로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Patently-O」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래 4년~6년마다 약 1만 명의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새로 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USPTO에 등록된 특허 전문 변호사의 수는 지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특허 전문 변호사의 증가율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중반의 특허 전문 변호사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 배에 달하는 것이다.

「Patently-O」는 현재 USPTO에 등록된 특허 전문 변호사들을 변호사 등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경력이 15년 미만인 특허 전문 변호사의 수가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 전문 변호사들의 이러한 경력별 분포 차이에 대해 15년 전에 특허 전문 변호사의 '베이비 붐(baby

boom)' 이 시작되었다며 이러한 경력별 편중 현상은 상위 직급으로 진급하기를 원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승진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http://www.patentlyo.com>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침해 범죄 전담 인력 육성 추진

지난 11월 1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수사·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지식재산침해 범죄 처리능력 및 감독기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문화되었기에, 수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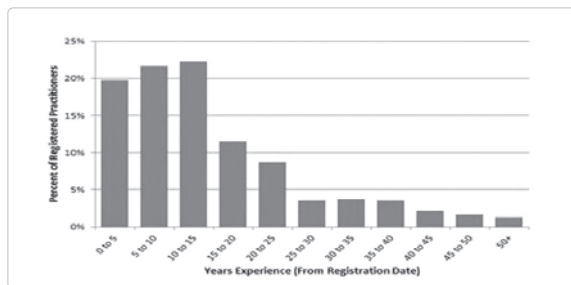
- 최고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등의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각급 지방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법원의 재판 및 형사사건의 수사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한편 「수사·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증거 심사 및 판단, 법적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검찰의 수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cnjpr.com>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 전문 변호사들의 경력별 분포〉



# KIPO

##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 줄이기 위한 특허출원 증가세

만약 1박2일 여행을 갈 때도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마트폰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단연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다.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전력증폭기가 관심을 끌면서 이 분야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00년부터 '11년까지 전력증폭기 관련 특허출원은 289건인데,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3G에서 4G LTE로 스마트폰 통신환경이 전환되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영상통화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전력증폭기 전력소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증폭기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출력단에 위치하는 부품으로, 고주파로 변조된 약한 신호를 증폭시킨 뒤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음성이나 데이터 통신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전력증폭기가 스마트폰 전력 소모의 70%정도를 차지해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높이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특허출원된 전력증폭기의 전력소모 감소기술에는 스마트폰 대기모드에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전력 효율이 좋은 증폭기를 사용하는 기술 등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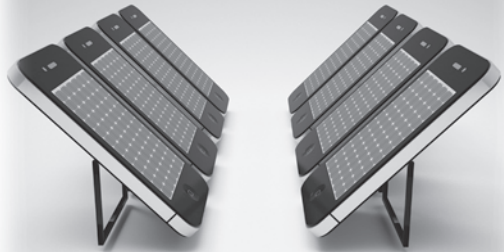
출원동향을 보면 대기업이 107건(37.0%)으로 가장 많고, 외국기업이 81건(28%), 대학 및 연구소가 60건(20.8%), 중소기업이 37건(12.8%), 개인이 4건(1.4%) 순이다.

출원인별로는 엘지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이 45건, 포항공대가 14건, ETRI 및 서울대가 각각 11건, 퀄컴 7건 순이다.

대기업과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과 특허출

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원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208건(72.0%), 미국 58건(20.1%), 일본 21건(7.3%), 유럽 2건(0.7%) 순으로 출원되어 전통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젠 상표도 '스마트시대'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스마트'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자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에 있어 '스마트' 혹은 'smart'는 과연 글자 그대로 '똑똑한' 상표에 해당할까?

특허청에 따르면, 2012. 10. 31. 현재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스마트'나 'smart'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출원된 상표는 전체 약 1,000여건을 상회하며, 이중 600건이 등록되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대중화의 기준점(개통 500만을 넘어선 2010년 10월 이후인 작년(381건)과 올해(232건)는 그 이전까지의 출원이 연 100건 미만으로 완만하였던데 반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품의 범위를 전자제품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스마트'가 붙은 상품이 스마트폰만은 아니다. 스마트 TV, 스마트카드, 스마트 센서, 스마트 자동차 등 언뜻 들어도 제법 익숙한 상품만 너댓개나 된다. 스마트가 기존의 상품명에 부가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재탄생되었는데,

# NEWS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컴퓨터의 지원기능을 갖춘' 제품들 이라는 것이다.

'스마트'란 단어의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스마트'나 'smart'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상표출원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품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스마트'와 같은 용어는 일반수요자들이 그것을 상표로 인식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스마트 혹은 smart를 포함하는 상표는 그 자체로는 결코 '똑똑한' 상표가 될 수 없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어용호 과장은 "스마트 혹은 smart를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상표만의 특별함이 없는 문자전체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거래자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나름의 독특한 도안화를 통해 등록된 실례를 살펴보면, "b@ smart", "Smart Asan", "My Smart" 등이 있다.

## 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고향의 개울이나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친숙한 풍경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친수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도심 하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속 하천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습의 징검다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검다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18건, 2008년 25건, 2009년 33건, 2010년 45건, 2011년 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징검다리는 하천을 건너기 위한 통행수단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하천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태공간인 동시

에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어 징검다리에도 다양한 기능이 접목되고 있는 추세다.

기능별 징검다리를 살펴보면,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된 징검다리, 물고기들이 노닐 수 있는 어소를 구비한 징검다리가 있고, 하천 수량변화에 따라 징검다리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 징검다리도 있다.

또한, 징검다리 고유의 기능에 경관이나 건강, 재미의 기능을 더하는 야관경관조명용 램프가 점멸되는 징검다리,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지압효과를 주는 징검다리, 디딜 때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징검다리 등이 특허출원돼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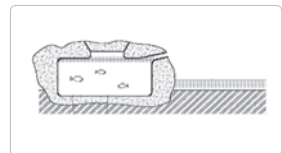
그외에도 하천을 따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전거와 함께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레일을 포함하는 징검다리도 특허출원했다.

### 징검다리 출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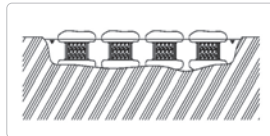
〈고기집이 형성되어 있는 징검다리〉



〈어소를 구비한 인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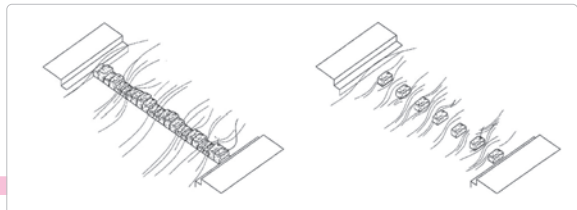
〈천연자연석을 이용한 수질정화장치〉



〈수질 정화용 징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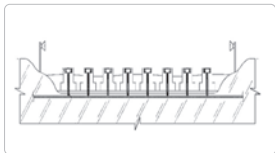


〈자동 징검다리용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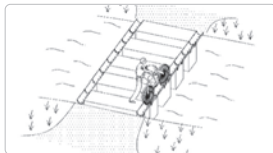


# KIPO

〈조경시설물의 놀이용 징검다리〉



〈자전거레일을 포함하는 징검다리〉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한자리에

특허청 주최 및 우리회 주관으로 국내 최대의 상표·디자인 전시회인 '2012상표·디자인권전'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Hall A)에서 개최됐다.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2012 우수상표권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최우수상표의 영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하여 원격으로 부모에게 아이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담은 (주)아람솔루션의 '마미링'이 안았다. 마미링은 울음소리를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아이디어 제품이다. 생소한 아이디어 제품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제품의 기능 소개는 물론 친근감을 더하여 상표의 기능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우수상표로는 브랜드그룹의 '한그리아' (한글)가 선정되었다. 문자 대신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한그리아는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상표로 다양한 약세사리에 활용되어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르다'와 '세다'는 우리말을 활용하여 농업용 전동차의 성능을 강조한 상표인 근우테크(주)의 '나르센', 제주올레길을 소개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주)섬엔지니어링의 '섬에올레',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상표

인 '돈돼돈' 등이 선정되었다.

특허청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현대 사회에서 상표와 디자인이 가진 경제적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창의력, 감성의 결합으로 탄생한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 상표·디자인권전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과 통합·개최되며,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제품의 전시 및 유통 촉진하는 국내 최대의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가가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 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드라마와 영화,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기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

# NEWS

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2PM, 빅뱅, 2NE1 등 그룹명이 상표출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룹명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최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K-POP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국제상표출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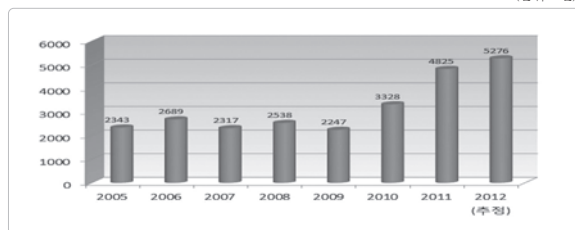
하지만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한 연예제작사의 상표 출원은 단 2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08년에 가수 '비'와 관련된 상표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에 출원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2NE1'이란 상표를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출원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취득,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음반 및 연예업 관련 국내 상표 출원 현황

(단위 : 건)



## 국내 연예제작사의 국내 상표 출원 현황

연예제작사 명칭	건 수	연예제작사 명칭	건 수
(주)태원엔터테인먼트	3	주식회사 게임점엔터테인먼트	3
(주)드림스타엔터테인먼트	3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50
(주)디에스피미디어	3	주식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6
(주)리쿠드엔터테인먼트그룹	1	주식회사 신나라뮤직	1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24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919
(주)성용뮤직	2	주식회사 엑셀런트 엔터테인먼트	3
(주)어치브그룹디엔	5	주식회사 오아시스미디어	2
(주)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76	주식회사 와이지 엔터테인먼트	60
(주)에당엔터테인먼트	30	주식회사 케이씨엔터테인먼트	276
(주)올림엔터테인먼트	14	주식회사 케이와이피	145
(주)케이플렉스	6	주식회사 좋은친구들	1
(주)케이포스트	8	주식회사 컴엔터테인먼트	38
(주)케이플러스	2	주식회사 코리아라움	2
(주)투브콤	8	주식회사 키이스트	127
(주)플래디스	15	주식회사 태영미디어	2
글로벌스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41	주식회사 티엔티엔터테인먼트	9
앨범미디어 주식회사	89	지앤지프로덕션(주)	5
원오원엔터테인먼트(주)	1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	1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22	<b>총합계</b>	<b>2003</b>

※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등록된 연예제작사의 상표출원 현황임 (건수 : 류별)  
※ 상기 수치는 2005년 ~ 2012년 10월까지 누적 건수를 대상으로 함

##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출원 사례

기획사	표 장 견 본				
SM	Super Junior	소녀시대	샤이니	보아	에프엑스
JYP	Wonder girls	2PM	2AM	JYP	미쓰에이
YG	BIGBANG	2NE1	PSY	서진	EPIKHIGH

※ 상기 사례는 2005년 이후 출원건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연예제작사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국제출원번호 표 장	출원 상세 정보
881435 RAIN 비 雨 비	- 출원인 : JYP ENTERTAINMENT CO., LTD. (현재는 RAINY ENTERTAINMENT CO., LTD.로 변경) - 출원년도 : 2008년 - 출원국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 출원현황 : 2개국(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등록, 3개국(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거절, 1개국(중국)은 심사진행중
1084005 2NE1	- 출원인 : YG ENTERTAINMENT CORPORATION - 출원년도 : 2011년 - 출원국 :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베트남 - 출원현황 : 모두 심사진행중

※ 상기 사례는 2005년 이후 출원건을 대상으로 함

제공 특허청

# KIPA



## 2012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퍼런스 개최

우 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30일 양 일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2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년에는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저성장기 극복전략'이라는 주제로 'IP금융' 'IP경영' 두 개의 세션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IP금융 세션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금융 연계지원 정책, KDB산업은행의 테크노뱅킹 운영방향, 투자자 관점에서 본 IP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IP경영 세션에서는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국 지식재산권 거래소 이용방안과 비즈니스모델 작성 방법론 등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컨퍼런스 외에도 성공사례 발표회 투자 설명회 기술이전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행사 첫째 날에 개최된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업재산권을 외부로부터 이전받아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얻은 사례들을 엄선하여 시상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 이외 대학·공공(연) 및 기술거래기관들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함께 소개해 기술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날에 진행된 기술이전 설명회에서는 국내 4개 대



# NEWS



## 우리회, 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우리회는 지난 11월 19일 19층 회의실에서 재무건전성 개선 및 은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서강대, 시립대, 숭실대, 가톨릭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기술수요자와 기술 이전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 코너도 별도로 운영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과 개방을 키워

드로 하는 FTA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견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기반경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주요 5개국 서울에 모여 '직무발명 활성화' 토론

**한** · 미 · 중 · 일 ·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직무발명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특허청 주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후원, 우리회와 지식재산포럼이 주관하는 '직무발명 국제 심포지움'이 '2012년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지난 11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의미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보상과 관련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우수인재 확보, 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주요 5개국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각 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사회로 김준호 변호사, 이두형 부장판사가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과 최근 판례를 설명했고, 미국·중국·일본·독일

변호사·변리사가 각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소개와 최근 동향, 판례를 소개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박성수)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상희 녹색살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피용호 한남대 법대 교수, 유영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철 (주)캐프 사장,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심포지움 때 나온 발전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건의된다.

앞서 열린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선 시상식과 우수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최우수상에 (주)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 우수상에 (주)필룩스(대표 노시청)·(주)플러스기술(대표 정석현)·(주)코아옵틱스(대표 정윤정) 등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 NEWS



## KIPA 사회봉사단 '연탄배달 · 무료급식'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을 방문해 저소득층 가구 및 독거노인에게 쌀과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다일복지재단을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임직원들은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손수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도 전달했다.

한편,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전담조직과 인력확보, 사내 발명경진대회, 특허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특허·디자인출원이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315건으로 늘었다. 이는 회사매출 증대로 이어져 2010년 1분기 908억원에서 올 1분기 1972억원으로 불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겐 직무발명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종업원에겐 발명의욕을 높여 기술혁신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2012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 개최

KT 등 8개 기업과 청소년 발명가들의 우수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

올해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12월 5일 기업 연계 청소년 발명교육 프로그램인 YIP(Young Inventors Program :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 및 결과 발표회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 참가 우수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교육 과정을 통해 개선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펀칭 기능이 추가된 바인더, 여러 가지 기능을 소화하는 스마트폰 홀(hole) 버튼, 용도에 따라 형태 변경이 가능한 책상 등 청소년 특유의 기발하고 특 특 튀는 아이디어들이 전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YIP는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는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YIP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캠프교육, 기업 현장견학 교육, 특허 컨설팅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 정신, 기업이 정신 등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12년에는 듀오백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한경희생활과학의 8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발명인재 양성에 힘썼다.

# NEWS



##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우수 발명스토리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 11월 27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2012대한민국 발명스토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과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 대학생, 교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공모전에는 2,252점의 작품이 접수돼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청소년, 교원, 대학생 부문으로 시상됐으며,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점, 지식경제부장관상 1점), 금상(특허청장상 6점), 은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11점), 동상(후원기관/한국발명진흥회장상 18점),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80점), 특별상(특허청장상 등 2점), CEO상(기업대표이사장 9점) 등 총 129점의 수상작(수상자 172명)에 대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청소년부문 대상작으로는 이승찬 학생(이담초등학교)의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초인종 발명과정’을 담은 UCC작

품이, 교원부분은 장지웅 교사(이담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도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학생 부문에는 KAIST, 연세대학교 등 28개 대학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대상에는 전남대학교 차원호·정재훈·김성도 학생의 공동 작품이 선정됐다.

이어 개최된 ‘2012 IP STORY FESTIVAL’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제로, 지식과 감성이 융합된 스토리텔링의 축제장이 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세미나와 컨퍼런스처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해 총 6개(‘뽀통령의 나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특허청 박건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을 통해 다소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발명과 지식재산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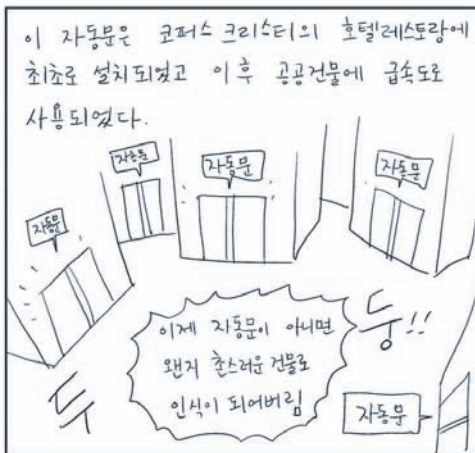


# 굴래 발명 이야기 - 자동문



글·그림 김민재





# 겨울, 면역력을 키워라

겨울이 되면 보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몸의 쇠약한 기운을 보강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즉, 인체가 가진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면역력은 인체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정기존내 사불가간(正氣存內 邪不可干)'이라고 해서 몸의 정기(면역력)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외부의 사기가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평상시 몸의 정기, 즉 면역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첫 걸음인 셈이다.

## 독소가 없어야 면역력도 산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내는 자가 해독 기능이 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오염된 공기, 인스턴트 음식, 만성 스트레스 등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 혹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자가 해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먼저 체내에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배출해서 몸 속을 청결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몸 속 노폐물은 간, 신장, 폐, 피부 등에서 해독되어 일부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대장을 거쳐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몸의 다른 곳을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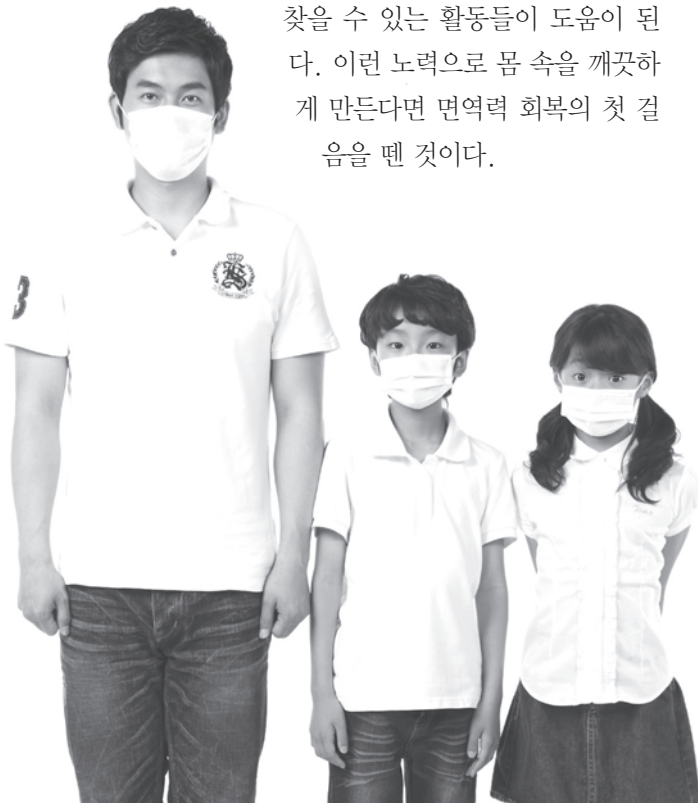
해도 최종적으로 대장을 해독하지 않으면 독소는 다시 몸 안에 쌓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독소는 혈액을 타고 몸 곳곳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해독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장의 해독을 위해 평상시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유산균은 유해균을 억제시켜서 장의 건강을 돕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7잔 이상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것도 숙변을 제거하고 장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위나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과식과 폭식의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장 건강을 지키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소 중 하나인 스트레스는 온갖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빨리 떨쳐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만드는 등

즐겁게 몰입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노력으로 몸 속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면역력 회복의 첫 걸음을 뗄 것이다.

### 면역력 강화를 돕는 음식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독 병치레가 잦고 어떤 사람은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늘 건강을 유지한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면역력의 차이가 크다.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거뜬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져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는데, 겨울에 감기, 폐렴, 알레르기 질환 등이 많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면역체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의 불균형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구내염, 방광염, 질염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면역력은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 면역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낸다고 하는데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음식이 약이 된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신체 각 장부가 튼튼해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각 장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대표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선한 채소와 제철과일, 견과류, 푸른 생선, 발효식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 면역력이 좋아지는 온도 36.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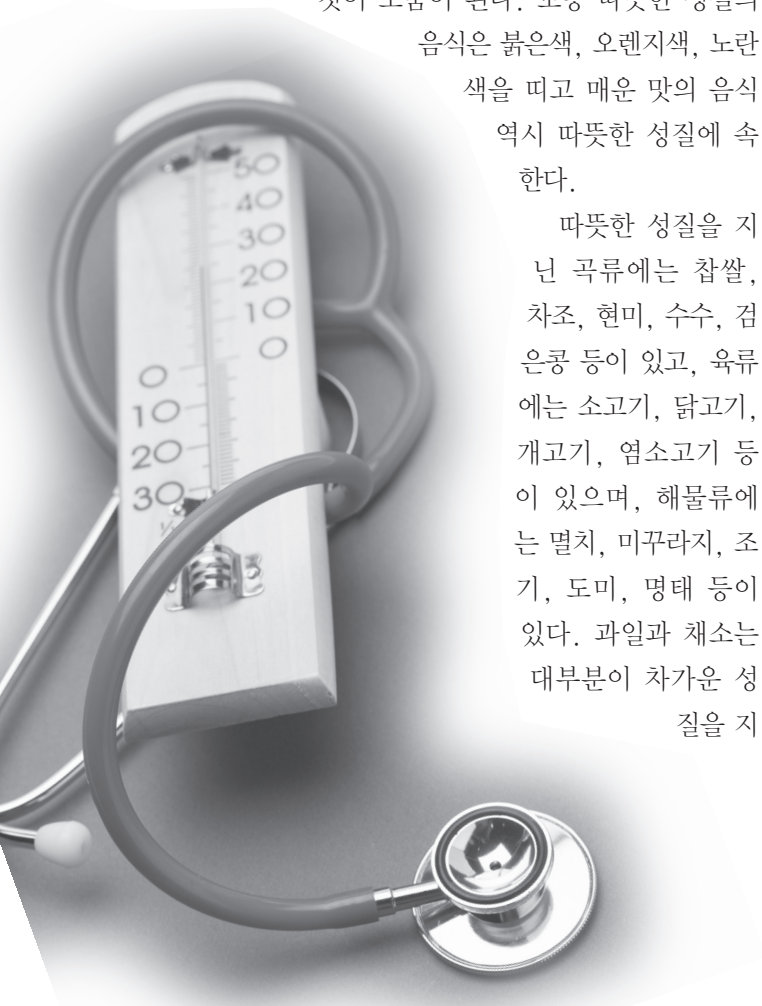
체온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겨울철 기온이 푹 떨어지면 체온을 뺏기기 쉬운데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특히 혈액은 신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 산소, 면역물질을 운반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져 35.5도가 되면 배설기능이 저하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며,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체온을 적정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겨울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쉽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통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띠고 매운 맛의 음식 역시 따뜻한 성질에 속한다.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곡류에는 찹쌀, 차조, 현미, 수수, 검은콩 등이 있고, 육류에는 소고기, 닭고기, 개고기, 염소고기 등이 있으며, 해물류에는 멸치, 미꾸라지, 조기, 도미, 명태 등이 있다.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이 차가운 성질을 지

니고 있지만 복숭아, 매실, 살구, 호박, 시금치, 당근, 우엉, 부추 등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된장, 간장과 같은 발효음식, 파, 마늘, 생강, 고추, 후추 역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물 대신 겨울에는 생강차와 대추차를 수시로 마셔주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또한 체온 유지를 위해 외출을 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보온을 해주는 것이 좋고 체온 유지에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걷기나 하체 운동 등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신체의 찬 기운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반신욕과 족욕도 좋는데 일주일에 2~3번씩 잠자리에 들기 전 꾸준히 해주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해소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2012. 12 |





## 뮤지컬<캐치미이프유캔>

스티븐 스피버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그들이 선사한 거짓말 같은 실화가 뮤지컬로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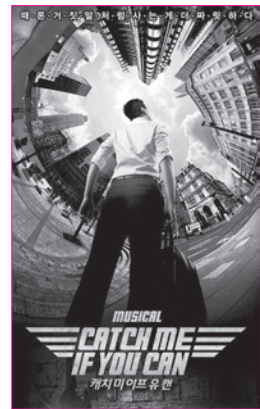
스티븐 스피버그의 진두지휘아래, 전 세계 최고 흥행 메이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2연패 톰 행크스의 결합! 헐리우드 사상 가장 화려한 스타 군단이 의기투합한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탄탄한 구성과 최고의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 결과, 2002년 총 1억6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대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의 흥행에 이어 2011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뮤지컬 'CATCH ME IF YOU CAN'은 영화를 잇게 하는 매력적인 무대로 수 많은 브로드웨이 "무비컬" 중 유일하게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떠올랐다.

전학 첫날 선생님이로 위장, 1주일 동안 전교생을 골탕 먹인 당돌한 '프랭크' 부모의 이혼으로 무작정 가출한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남을 속이는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낸 프랭크. 그는 조종사로 위장, 모든 항공 노선에 무임승차는 물론 회사 수표를 위조해 전국 은행에서 140만 달러를 가로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1년 경력의 FBI 최고의 요원 칼 해너티가 프랭크의 뒤를 쫓고, 오랜 추적 끝에 드디어 프랭크의 호텔방을 덮친 해너티, 하지만 해너티와 마주친 프랭크는 정부 비밀요원으로 둔갑, 증거물을 챙긴다며 위조수표를 챙겨 들고 여유롭게 빠져 나온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해너티는 자존심 회복을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프랭크의 가족, 하지만 자신을 속인 프랭크가 겨우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해너티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과연 칼은 프랭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들의 유쾌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공연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기간  
- 2012. 12. 14 ~ 2013. 2. 9  
관람시간  
- 140분

여기서 잠깐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smp@kipa.org

# QUIZ

1.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입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뜻하는 말은?
2.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불매운동은?
3. 한 나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은?

## 독자의견

- ▶ **고경표 독자** \_ 11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주제는 특허동향분석 보고서(특허맵) 자동생성 시스템이었다. 2년 전 참여했던 캠퍼스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특허맵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됐다. 그때 어떤 형식으로 특허맵을 작성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특허맵에 대한 표준화된 형식이 없을 뿐더러 데이터를 검색·가공·편집해야하는 일련의 정해진 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특허맵은 변리사와 같은 전문인력 외에 사업가·연구원들도 쉽게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맵을 작성하는데 있어 신속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맹정윤 독자** \_ 요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세계동향이나 특허 관련 전문가들의 칼럼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명특허'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일정도 발명특허에 많이 실어주세요.
- ▶ **문준영 독자** \_ 우연히 '발명특허'를 접했습니다. 칼럼이며, 소식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특허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과 쉽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세요.

## 11월호 퀴즈 정답

1. 티저광고
2. 컨슈머리포트
3. 김기덕 감독

## 퀴즈 정답자

- 고경표** 고양시 일산3동  
**맹정윤**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로2로  
**문준영** 이천시 창전동

##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정보지로 본사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 원고모집안내

월간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의견과 논문,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발명특허」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및 논평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smp@kipa.org

###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회원동향」란에 게재할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smp@kipa.org

편집 : 기획팀 박선민 주임 (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